

대한제국기 농촌사회경제구조의 변화 —1900~1903년 경기도 광주부 북방면을 중심으로—

이 세 영

1. 머리말
2. 광주부 북방면 개관
3. 북방면의 사회구조
4. 북방면의 경제구조
5. 맺음말

1. 머리말

19세기 말 조선봉건사회는 안으로 계속 확대되고 거세지는 전국적인 반봉건농민항쟁과 전쟁으로 봉건체제 파탄의 위기를 맞고 있었고, 밖으로는 제국주의 열강에 의해 국권이 침탈당하고 세계자본주의체제에 강제적으로 편입될 위기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위기를 해소하면서 반봉건근대사회를 세우려는 움직임은 농민들로부터, 또한 봉건지배계급들로부터도 일어나고 있었다.

농민들은 갑오농민전쟁시의 폐정개혁안에서 밝혔듯이 궁극적으로는 '농민적 토지소유'를 실현함으로써 그 과제를 달성하려 했고, 봉건지배계급들은 기본적으로 지주제를 유지하면서 부분적이고 개량적인 제도 개혁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했다. 봉건체제의 파탄을 눈앞에 둔 봉건지배계급들가운데는 그들의 기득권과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국주의 열강과 타협하는 분파도 나타나고 있었다.

이 시기의 농업사 연구는 따라서 반봉건농민항쟁의 주체 즉 농민항쟁의 주도계급을 찾는 데 주력하였다. 그리고 특별히 지정하진 않았지만 농민항쟁의 주무대가 삼남지방이었기 때문에 주로 삼남지방의 농촌사회 변동을 살펴 보게 되었다. 그 결과 특기할 연구성과는 '부농' 계급의 검출이었다. 즉 농업생산력의 발달과 상품화폐경제의 발전을 조건으로 지주제가 발전하는 이

면에 또한 양산되는 빈농과 함께 영리를 목적으로 고용노동을 이용하여 상업적농업을 경영하는 '부농' 계급이 성장하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부농' 계급이 장차 농민항쟁과 전쟁을 주도하게 될 것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부농' 계급의 실재 이전에 우선 연구방법에서 기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고, 그 결과 '부농' 계급의 설정도 매우 계량적임을 볼 수 있다. 그것은 주로 농업생산력의 발달, 상품화폐경제의 발전 등 주로 경제적 조건만을 변인으로 한 계급분석이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계급분석 방법은 더구나 혁명적 지향성을 갖는 농민계급을 추출하는데 있어서는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농촌사회'·농민·농업의 구조를 전체적으로 결합시켜 검토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농촌사회' 그 자체와 농민을 둘러 싸고 있는 정치사회적인 요인, 즉 그 농촌사회가 갖고 있는 지리적·정치적 특수성, 그 자체를 지배하고 있는 지배질서와 정신·문화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 가고 있는' 농민들을 관찰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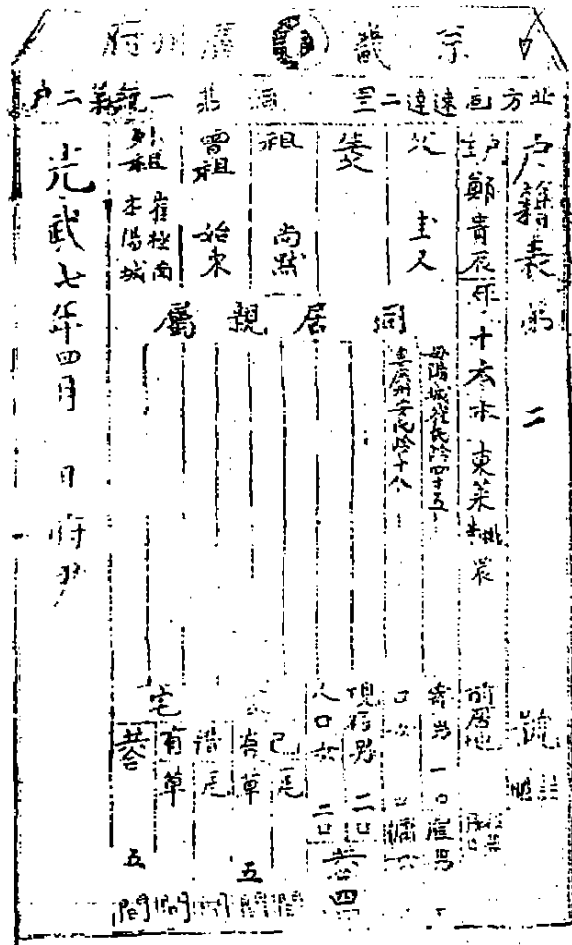
여기서는 농민전쟁이 일어나지 않았고 따라서 별로 주목받지도 못하는 근기지방의 농촌, 광주부 북방면의 사회경제구조를 살펴 보고자 한다. 이곳을 선택한 이유는 우선 이곳에서는 왜 농민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는가라는 점과 또 이곳은 선진적인 농업지역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삼남지방을 중심으로 한 농촌사회경제구조 연구결과에서 나타났던 농민층 분화양상과는 다른 변화를 전망하게 된다. 또 하나는 이곳의 사회, 경제구조를 함께 살펴 볼 수 있는 호적(『北方面 光武七年 四月 日 廣州府戶籍』 <그림 1>)과(1) 양안(『光武四年庚子十月 日 京畿廣州府北方面量案』), 광주부 邑誌(2)와 족보 등이 있기 때문이다.

(1) 대한제국기에 작성된 신호적의 소장 상황에 대해서는 武田幸男, 「학습원대학장 조신태적대장의 기초적연구—19세기 경상도 진해현의 호적대장을 통해서—」, 학습원대학동양문화연구소 조사연구보고 NO.13, 1977을 참고하라.

(2) 현재 서울대 규장각에 5 종류의 광주부 읍지가 소장되어 있다.

A. 洪敬謨(조선) 편, 憲宗 12년(1846) 『重訂 南漢志』(표지서명 『南漢志』) 13권 6책 (奎7113), 4087, 13권 3책 (奎4068)(『남한지』 조선고서간행회, 1916, 1983년 재영인됨)

B. 광주부 편, 년대 미상 『廣州府邑誌』 1책(37장), 奎10740, 10741



〈그림 1〉 廣州府戶籍 일부

그런데 과거의 농업사 연구 방법을 반성하면서 여기에서도 아직 새로운 시각과 방법에 의한 연구로 나아가지 못하고 말았다. 이점은 이후 새로운 자료의 발굴과 보완으로 보충할 것이다.

2. 광주부 북방면 개관

광주가 현재의 이름으로 개칭된 것은 940년(고려 태조 23)이었다. 983

- C. 광주부 편, 『光武三年五月 日廣州府邑誌』 1책(59장) 奎10701
- D. 광주부 편, 『光武三年五月 日廣州府邑誌』 1책(59장) 奎고915.12-G994b
- E. 광주부 편, 『廣州府邑誌』 1책(38장) 채색지도 奎12180

A 책이 가장 먼저 작성된 것이며, C 책과 D 책은 그 기재내용이 같다. E 책은 1871년에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다른 책과 비교해 볼 때 C, D 책 다음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호구수에서 B 책과 C 책이 일치하며, 전결수에서는 C 책과 E 책이 같다.

년(성종 2)에 전국을 12도로 나눌 때 광주목을 두어 관내도를 다스리게 하였다. 조선시기에 들어와 태조 때 경기좌도에 예속시켰고, 세종 때 鎭을 두어 여주목, 이천도호부, 양근군과 지평, 음죽, 양지, 죽산, 과천의 5현을 관할하게 하였다. 관원으로 목사, 판관, 교수 등을 두었다. 1577년(선조 10)에 부윤으로 승격되었고, 인조 때에 '이괄의 난'이 일어난 다음 서울 가까이에 방어지를 두어야 한다는 논의에 따라 산성(남한산성)을 대대적으로 개축하고, 이곳에 守禦廳을 설치하였다. 광주부의 읍치도 산성 안으로 옮겼다. 이후 광주유수는 守禦使 혹은 防禦使, 討捕使를 겸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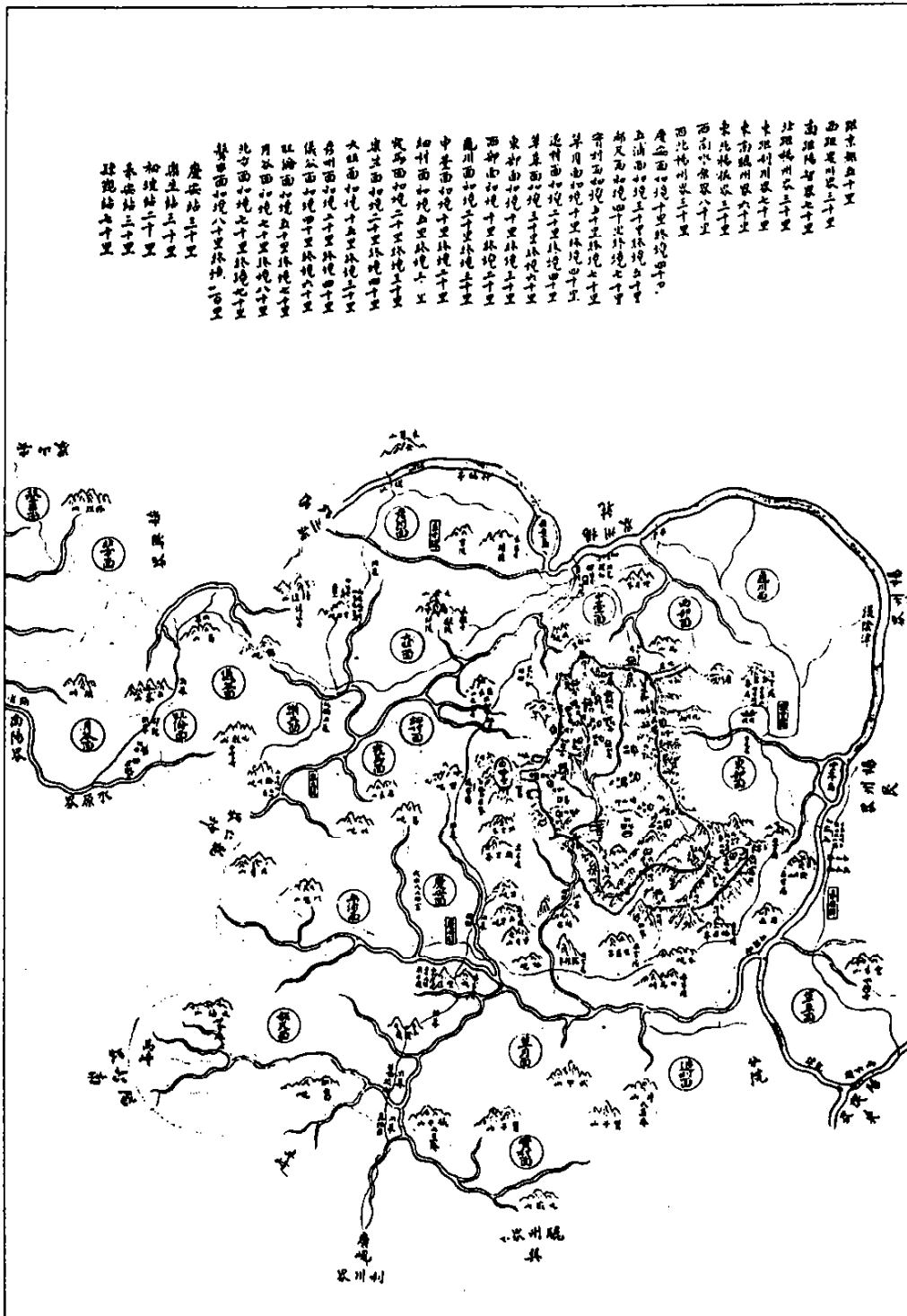
광주는 읍성이 서울에서 동남으로 40여 리 떨어져 있어 반나절이면 서울에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었다. 서울에 근접하여 있으면서 북으로는 한강을 두르고 남으로는 남양 수원 용인 양지 이천 등 여러 읍과 맞닿아 있었기 때문에 수도 방비의 요충이었다. 따라서 개성부, 강화부 함께 한성부 외곽에 위치하여 정치경제적으로 한성부를 보조하는 한편 특히 군사적으로 한성부를 방어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3)

守禦廳이 설치되었기 때문에 광주부는 전세와 대동을 중앙에 납부하지 않고 대부분을 군향으로 회록시켜 환곡으로 운영하였다. 특히 수어청은 광주부군의 다른 읍들과 충청·강원도의 수어청 군보(軍保)·아병(牙兵)이 내는 군역세, 각 도의 의승번전(義僧番錢)을 받아들였고, 해서·영남에 수어청의 환곡을 설치하여 이자를 받아들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후기 이래 삼정문란이 심해지면서 재정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래서 1858년에는 호조에 상납하던 奴婢貢 給代錢 6천냥을 본영에 소속시켜 지출에 보충토록 하기도 하였다. 이후 몇년 되지 않아 호조에 환납되었든지 1889년에 광주유수 민영소는 물가인상 등으로 인한 본영 사정의 어려움을 들어 노비공 급대전 6천냥을 다시 본영에 소속시켜주기를 요청하고 있다. (4)

광주부는 18세기 후반에 작성된 『여지도서』와 앞의 읍지에 의하면, 성내

(3) 광주부의 연혁, 형세, 조세부담 등은 1846년 광주유수겸 수어사였던 洪敬謨가 편찬한 『南漢志』(조선고서간행회, 1916, 1983년 재영인됨)에 의거함(『1862년 농민항쟁』 1988, 동년 414쪽 참조).

(4) 1889년 9월 15일조. 「1891년(고종 28) 辛卯 2月 日 廣州府 前留守 在任時 啓錄冊」 『各司謄錄』 5, 京畿道編 5, 국사편찬위원회편



〈그림 2〉 廣州全圖(1872년)

2개 동을 포함하여 23개 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가운데 북방면은 성
 곳면, 월곡면과 함께 서해안 쪽에 위치하고 있다. 1906에 이 3개 면은 안
 산군으로 이속되었고, 1914년 3월 군면 통폐합 때 수원군으로 이관되면서
 병합되어 半月面으로 개칭되었다. 중앙에 위치한 修理山의 속칭인 半月山의

이름을 따서 반월면이라 한 것이다. 1949년에 다시 화성군 반월면으로 개편되었으며, 1979년에는 반월면의 13개 리는 안산시로, 5개 리는 시흥군으로 편제되었다. 1995년 이 5개 리는 다시 군포시로 이속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경기도의 동북부는 강원도와 경계로 하고 있어서 산악이 많고 지세가 험준하지만, 서부 황해에 접한 곳은 작은 구릉들이 기복을 이루고 있어서 경기도의 주요한 생산지대를 이루고 있다. 경기도에서 광주부는 동서로 가장 긴 형세를 이루고 있으며, 구릉지가 발달하였다. 산들 사이로 남한강의 지류들이 흐르고, 그 연안에 좁은 평야지대를 이루고 있으며, 대표적인 평야는 동부를 북류하면서 남한강으로 흘러드는 경안천 부근이다. 전체적으로 주변의 다른 군에 비해서 고도가 높아 전체 면적에 비해 경지는 적은 편이다. 더욱이 토지가 척박하여 두배의 힘을 들여도 수확은 반밖에 나지 않아 비록 풍년이 들더라도 자급자족이 어렵다는 것이었다.⁽⁵⁾

특히 광주부의 맨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북방면은 해발 470여미터의 수리산 남쪽 기슭 골짜기에 걸쳐 있는데, 동남쪽으로는 월곡면에 그리고 서남쪽으로는 성곶면과 경계하고 있다. 수리산 골짜기에서 시작하는 반월천이 성곶면을 지나 서해안으로 흘러들어 가고 있는데, 이 반월천 상류 지류 연안을 중심으로 얼마간의 경지가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광주부 북방면에 사람들은 얼마나 살고 있었을까. 조선시기 국가와 지방의 재정은 토지와 호에 부과되는 세금에 의해서 충당되었다. 갑오개혁 이전 호는 가장 부담이 무거웠던 균역을 포함한 양역을 저야 했고, 이후에는 호포전을 납부해야 했다. 조선봉건정부는 선초부터 호패제와 오가작통제를 연결시켜 호적제를 실시함으로써 국역을 부담하는 호를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일반 양민의 경우 호적에 등재되는 것은 막중한 국역을⁽⁶⁾ 부담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피하려고 하였다. 또한 해당 관리들은 처음 정해진 元額에 충실하느라고 다소 변동이 있더라도 이전의 호총을 그대로 보고하거나 적당히 가감하여 보고하였다. 그것은 조선초기부

(5) 1876년 12월 일조, 위 책

(6) 갑오개혁 이전에 조세 중에서 호를 대상으로 부과한 것만 27종목에 달하였다 (김옥근, 『조선왕조재정사연구』 387~390쪽).

터 군 단위의 戶總制의 방식에 의해서 조세납부액을 정하여 부과했기 때문이다.

갑오개혁 이후 호포전은 모든 호를 대상으로 부과했기 때문에 정부는 전국적인 규모의 새로운 호구조사를 위하여 칙령 제61호 <호구조사규칙> (1896. 9. 1)을 반포하고, 호와 인구의 변동에 따른 새로운 호적의 작성, 분적, 개적의 경우에 대해 자세히 규정함으로써 철저하게 호구를 파악하도록 하였다.⁽⁷⁾ 그러나 새로운 호적제가 시행되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걸렸던 듯하다.⁽⁸⁾

18세기 이후 대한제국기까지 광주부의 호구수 변동을 살펴 보면 아래

(7) 칙령 제61호 <호구조사규칙>(1896. 9. 1)에서는 호구조사의 목적을 “전국내 호수인구를 상세히 編籍하여 인민으로 하여금 국가에 보호하는 이익을 균점케 함”(제 1조)이라 규정하고, 종래의 5가작통제와는 달리 10호를 1통으로 하고 통수를 두어 元戶 漏籍者와 인구 누탈자를 처벌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양식의 호적, 통표, 호패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內部令 제8호 <호구조사세칙>(1896. 9. 3)에서는 호적과 작통, 호패의 작성방법과 사무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특히 호와 인구의 변동에 따른 새로운 호적의 작성, 分籍, 改籍의 경우를 자세히 규정하여 호구를 철저하게 파악하도록 하였다. 호총의 확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3조 戶主의 父母兄弟子孫이라도 各戶에 分居하여 戶籍이 別有한 時는 該籍 內에 填入지 아니하여 人口가 疊載치 아니케 하며, 一戶主가 元戶는 成籍하였는데 他戶에 別居하여 別居하는 戶籍을 新成하는 時는 該籍 內에 原籍某地方을 欄外另行에 註明하여 考閱에 便易케 함

제4조 人民중에 無家無依하여 原籍을 別成치 못하고 族親知舊間의 戶內에 寄居하거나 혹 一身만 寄食하여도 寄口에 침입하여 人口漏落함이 無케 함(『한말 근대법령자료집』 2, 163~164쪽)

또한 統首의 임무 가운데 호구조사와 관련된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一. 元戶人口외에 借居寄口賃傭男女와 來自何處와 正事何事에 관한 事(『皇城新聞』 光武3년 1월 13일 「警廳告示」)

(8) 『皇城新聞』 光武 3년 7월 27일

“(戶口作奸) 光武二年度 戶口籍을 査함에 漢城과 十三道 并五百餘萬에 不過하다 하기에 其爽實한줄을 概擧하였더니 今에 其裡許를 詳問한즉 各地方의 所報한 戶口가 漏脫이 太多하여 內部로서 或還退更査케도하며 或郡守를 譴責罰俸으로 警勵도 하되…… 現方內部에서 三百餘郡 戶口를 一一調査하여 欺蔽隱漏한 者와 虛名增算한 者를 摘發한 후 장차 懲判을 大施할듯하다는데 其間現頃한 郡이 不少한 中 忠淸道와 京畿各郡에 其弊端이 尤甚하다더라”

〈표 1〉 광주부의 호구수 변동

면, 동	1759년*		1836년**		1898년***	1899년****
	편 호	인 구	원 호	인 구	원 호	호 수
경안면	497	2,127	541	2,584	615	657
오포면	558	3,302	417	2,429	584	627
도척면	454	2,059	469	1,615	463	585
실촌면	520	2,790	599	2,321	610	653
초월면	548	2,734	590	3,006	813	838
퇴촌면	320	1,415	462	1,487	387	478
초부면	361	1,598	358	1,487	271	424
동부면	767	3,273	722	2,921	682	772
서부면	476	2,419	487	2,654	557	546
구천면	376	1,911	412	2,071	579	540
중대면	656	2,850	727	3,237	755	770
세촌면	423	1,850	375	1,674	368	440
돌마면	495	2,505	460	2,364	437	575
낙생면	639	3,351	579	2,392	539	616
대왕면	776	3,733	772	3,771	918	1,007
언주면	864	4,405	738	3,256	927	979
의곡면	275	1,113	287	1,241	283	317
왕륜면	276	1,232	276	1,217	277	374
월곡면	351	1,173	352	1,057	297	359
북방면	317	1,511	327	1,362	245	449
성곶면	327	1,705	356	1,408	329	367
성내면	1,076	4,608	1,117	4,353		1,161
문의동					361	
계	11,352	52,787	11,423	50,045	11,307	13,534
僧 戶			237	455		

출전: * 『輿地圖書』의 己卯(1759년)帳籍

** 『南漢誌』의 丙申(1836)帳籍

*** 『度支部內部公文去來牒』(奎 17881) 廣州府戊戌戶布區別都數成冊

**** 『廣州府邑誌』(奎 12180)

〈표 2〉 光武3年(1899) 1월 廣州府戊戌(1898)戶布區別都數成冊

면 명	元戶數	應頃戶名	應頃戶數	在戶數
경안면	615	寡女	1,198	
오포면	584	病人	63	
도척면	463	四陵軍	280	
실촌면	610	三大君房 兩公主房 墓山直	21	
초월면	813	廣平大君房 墓山直	4	
퇴촌면	387	密城君房 墓山直	4	
초부면	271	綾昌大君房 墓山直	8	
동부면	682	玉山大嬪 墓山直	4	
서부면	557	肆觀坪 正堂 守直	1	
구천면	579	官砲手	50	
중대면	755	鄉校 校生·守僕	4	
새촌면	368	巡牟兵	3	
돌마면	437	沙工	10	
낙생면	539	兵丁	26	
대왕면	918			
언주면	927			
의곡면	283			
왕륜면	277			
월곡면	297			
북방면	245			
성곶면	329			
문의동	361			
합 계	11,307		1,709	9,589

〈표 1〉과 같다.

〈표 1〉에서 1759년과 1836년의 호수는 '編戶'數 혹은 '元戶'數이다. 즉 호총제에 의하여 국역을 부담해야 하는 호수인 것이다. 토지에 비유하면 元摠이 되는 셈이다. 두 시기를 비교해 보면, 면에 따라서는 호총에 다소 변동이 있지만 광주부 전체로 보아서는 큰 차이가 없다. 1836년의 원호는 1759년에 비해 77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71호, 0.6%가 늘었을 뿐이다. 이미 호총은 정액화되어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북방면은 317호에서

327호로 10호가 늘었지만 인구수는 149구나 줄었다.

이어서 1898년의 원호 총수 11,307호는 1899년 1월 24일 당시 광주부윤이었던 이종원이 호포전 부과 대상호수를 산출하면서 보고한 액수이다.

즉 원호 총수 11,307호는 戶錢元摠으로서 호포전 부과대상호였다. 이를 1836년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조종한다면 12,063호 정도가 된다. 즉 성내동의 호수를 1836년 것으로 하여 1,117호로 계산하고, 문외동 361호를 제외하여 가감한 것이다. 그러면 1898년의 원호수는 1836년에 비해 약 640호, 5.6% 증가한 셈이 된다. 10개 면에서 증가했고, 11개 면에서 감소했다. 북방면은 327호에서 245호로 82호나 감소했다.

한편 1899년의 전체 호수는 13,534호로 1898년에 비해 1,471호, 12.2%나 증가했다. 서부면과 구천면을 제외하고 모든 면에서 증가했다. 특히 북방면은 245호에서 449호로 204호, 83%나 증가했다. 불과 1년 사이에 지난 70~80년 동안의 증가율을 훨씬 상회하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큰 변동이 일어났을 리는 없다. 따라서 1899년의 전체 호수는 호포 원총, 즉 원호수가 아니라 갑오개혁 이후 새로운 호적제에 의해 파악된 실재호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것은 이종원의 보고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⁹⁾

그는 <표 2>처럼 보고하면서 호포 과세대상호 즉 원호수와 장적의 호수가 일치하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재호'에 과세할 수 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다. 즉 원호 총수 11,307호에서 이전부터 면제받아 왔던 과녀호와 병인호, 그리고 신역을 저 온 사능군호 등 각종 응탈호 1,709호를 제외한 在戶 9,598호에 매호 3냥씩 합 28,794냥을 부과하게 됨으로써 재호수가 호전

(9) 1899년 1월 24일 광주부윤李宗源의 보고: “호포부담호와 帳籍의 호수가 일치해야 한다. 父子兄弟叔侄이라고 만일 分戶하면 각각 호적을 작성해야 하는 것이 新章程의 규칙이다. 戶錢排定時에 從實執摠하고, 장적에 대해서는 조사규칙에 의해 流離 被燒 頽壓 死亡者를 하나도 빼지 않고 각 호마다 호적을 만들면 戶錢元摠과 같을 지 모른다. 그러나 민습에 四祖를 모르는 孤寡 이외에도 대부분 투탁하거나 유리하여 漏籍하려고 한다. 얼르고 협박하여 가까스로 수를 채워 징세한다. 특히 이른바 廊戶, 率戶 등은 호포를 납부해도 分籍은 고사하고 畝籍하는 자가 많다. 금년 호적은 호포 원총에 실적을 보고하고자 하나 그 차이를 메꿀 수 있을 지 의문이다. 1899년 春秋等戶錢의 징수가 시급하여 實摠을 수정보고하니 조치해 주기 바람”(『度支部內部公文去來牒』)

원충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응탈호 외에 流離·被燒·頽壓·死亡者를 하나도 빼지 않고 成籍하고, 더우기 1호로 合籍하고 있는 父子兄弟叔侄 등을 分戶시키고 또한 廊戶와 率戶 등을 分籍시키면 그 차이를 메꿀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10) 그것은 즉 원호 가운데에 부모형제숙질 등이 1호로 합적되어 있는 호와 자기 호안에 낭호와 솔호 등이 합적되어 있는 호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호구조사규칙>에 의해 모든 실재호를 파악한다면, 그것은 1호주의 호, 지금은 누적되어 특정한 호주의 호에 합적되어 있는 血緣合籍戶와 非血緣合籍戶로서의 廊戶와 率戶 등의 挾戶, 鰥寡孤獨의 挾戶, 각종 身役을 지고 있는 호, 유리·피소·퇴압·사망 등에 의한 無亡虛戶, 山幕戶·土幕戶 등으로 이루어 진다. 때문에 실재호수는 행정구역의 조정이나 자연감소 등에 의한 호의 감소 혹은 증가가 없다면 원호수보다 훨씬 늘어날 것이다.(11)

결국 1899년의 호수는 1898년에 비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호적제에 의해서 비로소 파악되기 시작한 실재호수였던 것이다. 그것은 광무양안에서도 확인된다.(12)

1900년 『북방면 양안』에 의하면 북방면의 원호 수는 270호, ‘査起戶’ 수는 421호이다. 사기호는 광무양전시에 토지에 관련된 모든 것을 파악한다는 원칙 아래 실제 조사파악된 실재호수였다. 한편 1903년 『광주부 호적』에는 원호 277호가 등재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대한제국기의 북방면의 원호수는 245호~277호, 그리고 실재호수는 421호~449호 정도로 추산된다. 원호수와 실재호수가 이렇게 차이가

(10) 『度支部內部公文去來牒』 議政府贊政內部大臣署理內部協辦 閔丙漢의 照會

(11) 이세영, 1992 「대한제국기의 호구변동과 계급구조」 『역사와 현실』 7, 한국역사연구회

(12) 1900년 4월 이후 조사된 충청남도의 남부지역에서는 원호뿐만 아니라 ‘협호’도 실사하여 파악하고 있다. 실재호구를 파악한 이유는 호구조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며 나아가 호세를 부과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삼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충북 진천군 양진은 1900년 5월 21일부터 7월 7일까지 이루어졌는데, 이 때 호구를 철저하게 파악하였다. 이후 1903년 그것을 근거로 호세를 부과하였다. ‘文上面 新戴洞報以本洞以三十六戶應布而 今以改量戶數四十五戶出秩則 庚子以後 顛伏者爲四戶也 特爲頓下事’ (왕현종, 1995 「대한제국기 量田·地契사업의 추진과정과 성격」 『대한제국의 토지조사사업』 89쪽)

〈표 3〉 광주부의 각 면별 토지면적(면적단위: 結-負-束)

면 별	밭	논	계
경 안	218-64-3(68.1%)	102-50-7(31.9%)	321-15-0(100%)
오 포	223- 7-5(80.7)	53-11-0(19.3)	276-18-5(100)
도 척	170-98-5(63.8)	97- 0-3(36.2)	267-98-8(100)
실 촌	127-71-6(61.5)	80- 1-0(38.5)	207-72-6(100)
초 월	214-94-9(80.8)	51- 6-0(19.2)	266- 0-9(100)
퇴 촌	66-64-3(45.0)	81-65-6(55.0)	148-24-9(100)
초 부	126-66-1(61.0)	81-14-0(39.0)	207-80-1(100)
동 부	206-78-8(78.2)	57-50-0(21.8)	264-28-8(100)
서 부	209-60-7(79.2)	55- 0-1(20.8)	264-60-8(100)
구 천	312-29-5(70.4)	131- 0-1(29.6)	443-29-6(100)
중 대	261-39-5(64.5)	144-10-1(35.5)	405-49-6(100)
세 촌	134-24-7(68.3)	62-33-0(31.7)	196-57-7(100)
들 마	168-58-4(62.5)	101-22-1(37.5)	269-80-5(100)
낙 생	166-52-2(62.2)	101- 0-9(37.8)	267-53-1(100)
대 왕	267-51-6(70.5)	112- 4-3(29.5)	379-55-9(100)
언 주	634-48-4(75.1)	210-10-4(24.9)	844-58-4(100)
의 곡	65-50-1(54.7)	54-24-1(45.3)	119-74-2(100)
왕 룬	84-29-2(53.8)	72-40-2(46.2)	156-69-4(100)
월 곡	155- 3-5(71.8)	61- 0-3(28.2)	216- 3-8(100)
북 방	158-90-8(83.1)	33-21-0(16.9)	191-11-8(100)
성 곶	99-13-9(66.8)	44-24-4(33.2)	143-38-3(100)
계	4,072-98-5(69.5)	1,785-89-6(30.5)	5,858-88-1(100)

*출전: 『南漢誌』의 丙申(1836)집계

나는 것은 원호 자체가 자연적으로 증가하기도 했겠지만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은 합적호 등이 各籍分戶되면서 추가로 파악되었기 때문이다. 후술하겠지만 북방면의 원호 가운데 대가족구성의 양반가는 대체로 부자형제 숙질 등의 합적호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현존인구'로 기재되어 있는 畝口의 일부는 비혈연합호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호들이 〈호구조사규칙〉에 의해 비로소 새로이 파악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다음으로 19세기 광주부의 각 면별 토지면적과 그 변동을 살펴 보자. 우

선 1836년 광주부의 각 면별 토지면적은 <표 3>과 같다.

즉 1836년 광주부의 元帳付田畝 면적은 5,858결 88부 1속이다. 전체적으로 밭과 논 의 비율은 7:3이다. 토지면적상으로 볼 때 북방면은 작은 면에 속한다. 북방면 전체 토지면적은 191결 11부 8속인데 그 가운데 밭이 158결 90부 8속으로 83.1%를 차지하고 있다. 21개 면 가운데 밭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들 토지가 실제의 토지면적은 아니었다. 그것은 과세대상으로서 元帳에 올라 있는 토지면적이며 일정기간 동안 고정된 것이었다. 실제의 토

<표 4> 광주부의 토지구성과 변동

地 目	1869년		1889년	
	밭	논	밭	논
元下之下田畝	4,109-91-1	1,748-97-0	4,109-91-1	1,748-97-0
無稅田畝	1,000-49-2	611-52-9	1,000-62-5	605-90-9
各年 成川田畝	441-44-1	119-25-8	442-44-1	117-71-9
各年 仍陳畝		19-14-1		19-14-1
各年 浦落田畝	27-90-7	15-56-3	27-90-7	0-13-3
各年 覆沙田畝	32-61-0	2-40-5	32-61-0	2-40-5
各年 墓入陳田畝	13-25-9	0-15-6	13-25-9	0-15-6
加耕無土永減田	53-20-3		53-20-3	
各年 樹木成林田	175- 8-6		175- 8-6	
各年 各衙門還出稅陳田畝	369-94-4	35-43-4	369-90-4	35-43-4
妄冒畝		0- 0-4		0- 0-4
實下之下田畝	1,985-96-9	683-91-7	1,994-83-6	872-69-3
上年成川未蒙頃全災畝		261-15-7		94-87-6
勸耕還起畝(庚午/庚寅)		0-40-7		0-50-0
合下之下畝		945-48-1		968- 6-9
丁卯戊辰己巳勸耕還起畝		0-76-6		
流來各年成川全災畝		76-67-9		106- 5-2
戊子己丑庚寅勸耕還起畝				1-53-8
實下之下畝		868-3-6		860-47-9

* 출처: 『各司謄錄』 5 경기도편5, 국사편찬위원회

지는 어떻게 파악되고 있었는가. 1869년과 1889년의 예로 원전답면적의 내역과 변동을 살펴 보면 아래 <표 4>와 같다.

1836년의 원전답면적 5,858결 88부 1속은 1869년과 1889년에도 그대로이다. 다만 논 면적이 약간 늘었을 뿐이다. 1869년과 1889년을 비교해 볼 때 원전답의 구성 지목과 그 변동은 거의 없으며, 다만 災田畝結數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경작지이기 때문에 원전답에서 無稅地(궁방전의 無土 등)와 成川田畝 등 실제로 경작할 수 없는 토지를 제외한 元總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1869년 원총은 2,931결 45부(實下之下田 1,985결 96부 9속과 合下之下畝 945결 48부 1속을 합한 것)이며, 1889년 원총은 2,962결 90부 5속(實下之下田 1,994결 83부 6속과 合下之下畝 968결 6부 9속을 합한 것)이다. 31결 45부 5속이 증가했다.

한편 元總에서 3년 이내 起耕되어 면세되는 경지와 舊災畝등을 제외하면 당년에 총납세결인 實總이 되는데, 1869년의 실총은 2,854결 45부(實下之下田 1,985결 96부 9속과 實下之下畝 868결 3부 6속을 합한 것)이며, 1889년의 실총은 2,855결 31부 5속(實下之下田 1,994결 83부 6속과 實下之下畝 860결 47부 9속을 합한 것)이다. 20여년 동안 실총에 거의 변함이 없다. 1869년~1889년의 실총은 원전답의 약 1/2 수준이다.

그런데 실총은 당년의 납세결수일뿐 그것이 곧 전체 경작지는 아니다. 官房田, 官屯田 등 無稅地는 정부에 납세하지 않는 토지일 뿐 경작되고 있는 토지이다. 따라서 전체 경작지는 이미 陳田이 되어 경작할 수 없는 토지를 제외한 원총에 무세지를 더한 것이 될 것이다. 1890년 무렵 광주부의 장부상의 경작지는 원총 2,962결 90부 5속에 무세지 1,606결 53부 4속을 합친 4,569결 43부 9속이 되며, 원전답 5,858결 88부 1속의 78%에 이르고 있다.

이어서 1899년에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는 『光武三年五月日 廣州府邑誌』에 의하면, 광주부의 元帳付田畝 면적은 5,634결 67부(밭 3,886결 13부 1속, 논 1748결 53부 9속)로 1890년 원전답 5,858결보다 220결이 줄었다. 1889년 당시 실제의 경작지가 어느 정도였을지는 알 수 없으나 1894년 ‘甲午陞摠’에 의해서 無土가 出稅地로 전환되고 많은 陳田들이 起耕田으로 파악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거의 원전답면적에 육박했을 것으로 추

측된다.

한편 1899년 북방면의 원전답면적은 밭 114결 13부, 논 74결 63부, 전체 188결 76부이다. 1836년(〈표 3〉)과 비교하면 전체 면적에서 2결 35부 8속이 줄었다. 밭이 45결 가량이 줄어든 반면에 논은 2배 이상으로 늘었다. 논 면적이 늘어난 것은 反畚이 일어났거나, 浦落畚과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던 災畚 등이 다시 起耕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원전답면적 전체는 6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변화가 없다. 호총제에서 원호수 즉 호총이 고정되어 유지되듯이 원전답면적 즉 원결도 일정한 시기에 정액화되어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戶政과 田政의 운영원리는 한가지였다.

그런데 1900년 양전하여 작성된 『北方面 量案』에 의하면 경작지는 밭 100결 80부 6속(3,082,974尺), 논 124결 30부(2,978,571尺), 전체 225결 18부 6속(6,061,545尺)이며, 元結 즉 원총은 151결 24부 5속으로 집계되고 있다. 1899년의 원전답면적 188결 76부보다 36결 42부 6속이 더 파악되었다. 그러나 1년 동안에 이처럼 경작지가 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사실은 1900년 양전에 의해 비로소 실제의 토지면적이 파악된 것이다. 마치 戶政에서 갑오개혁 이후 〈호구조사규칙〉에 의해 누적호가 새로이 추가 파악되었듯이 광무양전에 의해서 은결 등이 조사, 파악됨으로써 원전답면적 이상의 실제의 토지면적이 파악된 것이다. 그 가운데는 진전 등이 함께 조사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의 경작지를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광주부 전체의 토지면적과 실제 경작지도 元結과 元摠, 實摠 이상으로 파악되었을 것이다.

3. 북방면의 사회구조

1899년 광주부읍지 「姓氏」條에 의하면, 광주부에는 “本州李尹石韓安金表盧張朴池 諸姓譜廣州 覆姓有石株 今則無 惟李安兩姓最著”라고 하여 본관을 광주로 하는 성씨들이 소개되어 있고, 다시 「인물」조에 주로 안씨와 이씨의 인물들 그리고 소수의 타성 인물들이 소개되어 있다.

안씨는 고려태조가 安邦傑을 光陵君으로 봉하여 賜籍함으로써 그 본관이 정해졌다. 그 후손들은 고려말 ‘易姓革命’기에 관직을 그만두거나, 이성계

일파의 조선건국에 협조하지 않고 함안으로 퇴거했다. 선초에 그들에 대한 선무, 회유가 있었으나 관직에 나아가지 않고 金宗直 문하에서 士林으로 성장해 갔던 것으로 보인다. 그 가운데 일파는 선초이후 과거를 거쳐서 관직에 나아가나 거듭되는 '士禍'로 피해를 입고 광주로 다시 퇴거함으로써 그 후손들이 대대로 광주에 살게 되었다.

광주 이씨 역시 고려말에 조선건국에 저항하였다가 선초에 주로 과거를 거쳐서 관직에 나아가지만 일파는 광주의 향리로써 토착세력이 되었다. 이 밖에 진주 정씨, 능성 구씨, 평강 채씨, 초계 변씨, 광산 정씨, 남양 홍씨, 해주 오씨, 초계 정씨, 안동 권씨, 문화 유씨, 파평 윤씨, 광산 김씨, 청송 심씨, 청주 한씨 등의 인물들 역시 선초이래로 관직에 나아갔다가 대개는 '士禍'나 '당쟁'에 연루되어 파직되면서 광주에 寓居하게 되었으며, 이후 후손들이 일가를 이루면서 집성촌을 형성하고 있다. 물론 이들 가문의 인물들 가운데는 새로 관직을 제수받아 나아가기도 하였다.

조선시기에 광주를 비롯한 기호지방은 지역적인 면에서 뿐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중앙권력과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었다. 광주를 비롯한 기호지방에 퇴거하게 된 사대부들은 대체로 정치적 피해를 입고 기호지방에 살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두 가지의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하나는 대체로 조선 전 시기를 통해서 정치권력을 장악했던 정치세력들과의 관계때문에 중앙권력과 대립하는 독자적인 정치세력이나 문화를 형성하지 않았던 반면에 다른 하나는 '畿湖南人'의 예에서 보듯이 정치투쟁에서 탈락되어 독자적인 사대부 문화를 이루었던 것이다. 따라서 광주를 비롯한 기호지방에 사는 사대부 후손들은 서울에 대해서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는 한편, 주요한 성씨가들의 혼인 관계에서 확인되듯이 토착세력에 대해서는 선민적인 의식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으로 기호지방의 토착민들은 정치 문화면에서 소외되었으며, 특히 그들은 중앙정부의 특별한 국역부담에 시달렸다. 그들의 세부담은 다른 지방민들에 비해 과중한 것은 아니었다. 중앙의 통치행정력이 직접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수령이나 세리들의 부정과 사적인 가렴주구에 특별히 시달리지도 않았다. 그러나 서울에 인접해 있었기 때문에 법정의 세부담 외에 궁궐건축, 왕능 조성 등 대규모 토목공사에 동원되어 경기민들의 국역부담

은 과중한 것이었다.

19세기에 이르러 삼정문란이 심해지는 가운데 지방에서는 재지토호세력들의 武斷이 또한 小民을 곤궁하게 만들고 있었는데 근기지방에서는 서울 朝官·朝士들의 무단이 심했다. 특히 전직관료들, 조관들과 世祿之家들이 가문의 분묘 조성을 위해 岡麓을 광점함으로써 끊임없이 산송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런데도 조관들을 함부로 처단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소민들의 피해는 막심했었다. 그리하여 대원군은 종친, 문무관 및 生員·進士·有蔭子弟에 이르기까지 분묘의 크기(四面步數)를 정하여 법제화하도록 요청하기도 하였던 것이다.(13)

1862년에는 전국적인 농민항쟁이 있었는데, 근기지방에서는 유일하게 광주농민항쟁이 있었다. 광주부민들이 10월 23일경부터 5~6일간 도성으로 몰려와 三政釐整廳의 당상이었던 趙斗淳의 집과 영의정 鄭元容의 집 앞에서 시위를 벌였던 것이다. 시위의 원인은 환곡세의 과중한 부과때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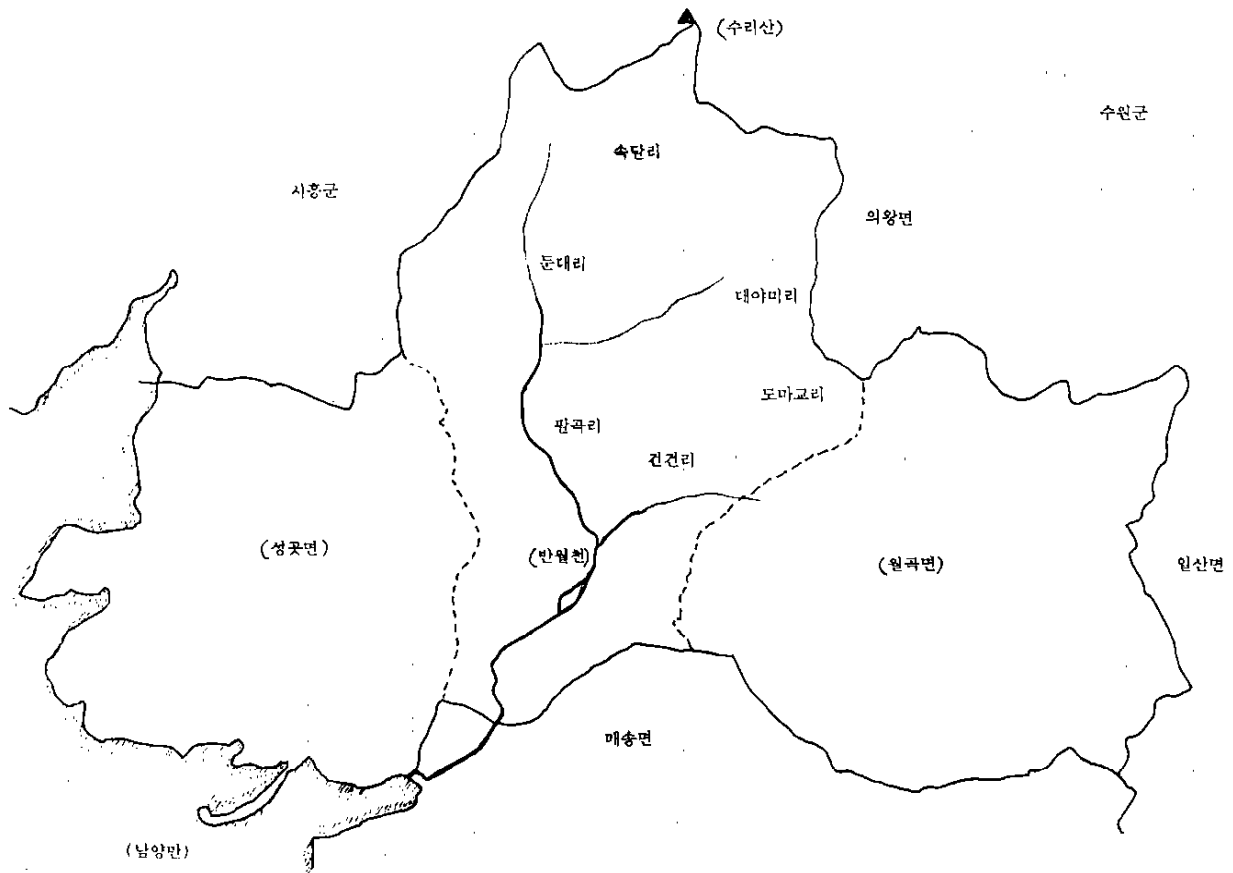
광주부는 수어청에 많은 군항을 저장하고 있었고, 그 곡식들을 환곡으로 운영보전하였다. 봉건정부는, 광주부에는 장부에 올라 있는 10만여 석의 환곡 가운데 6만 5천여 석이 이미 없어져 3만 5천여 석이 남아 있는 것으로 삼정이정절목에서 파악하였다. 그러나 당시 광주에 남아 있던 환곡은 정부의 파악과는 달리 1만 6천여 석에 불과했다. 삼정이정절목이 시행되기 전의 환곡세 부담은 이자곡 기타 잡비를 합쳐 약 7천여 냥이었다. 그러던 것이 7,850냥의 토지세부담으로 바뀌어 850여 냥의 추가부담이 생겼다. 그리고 실제로 남아 있는 환곡이 1만 6천여 석이었기 때문에 당해 상납분은 1만 6천여 냥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부상에 3만 5천여 석에 3만 5천여 냥으로 책정되었기 때문에 그 차액 1만 9천여 냥이 광주민의 추가부담으로 떨어졌다. 결국 2만여 냥이 넘는 돈을 3년간이나 계속 부담하게 된 광주민들은 유수와 판관에게 시정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에 광주민들은 관아 공격 대신에 곧장 서울로 올라가 시위를 벌였던 것이다.

釐整節目에 따르면 환자곡은 품질이 낮으므로 1석에 3냥씩으로 계산하게 되었는데, 광주부에서는 장부상의 액수를 메꾸기 위해 1석에 5냥씩으로 계

(13) 1870년 9월 19일조. 同治十年(高宗八年)辛未 八月 日 廣州府前留守在任時啓錄 冊. 『各司謄錄』 5, 경기도편 5, 국사편찬위원회

산해서 거들어 들였다. 때문에 광주민들은 “환곡의 쌀값을 1석에 5냥으로 계산하는 것은 너무 높다”, “환곡세를 폐지한다 하여 토지에 2냥씩의 조세를 더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항의하였던 것이다. 이 때 서울에 모여든 광주민은 6~7만 명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당시 광주민은 5만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위에는 광주민만이 아니라 도성민, 인근 군현민이 참가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정부측의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5~6일간 계속 시위를 벌였다. 10월 29일에 정부가 삼정이정절목을 폐지하고 예전방식대로 조세를 거둘 것이라는 조치를 내리자 광주민들은 비로소 시위를 중지하였다. 11월 3일 비변사는 철종에게 더구나 근기의 백성들이 시위를 벌인 것에 대해서 매우 위험한 일로 간주하면서 ‘광주농민항쟁’의 주모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요구하였고, 결국 주모자 몇 사람이 벌을 받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14)

당시 삼정문란과 특히 환곡운영 문란에 따른 세부담 과중이 농민봉기의



〈그림 3〉 북방면 지도(1918년, 50,000:1)

(14) 『1862년 농민항쟁』 1988 동녘, 414~415쪽

〈표 5〉 마을별 호내 인구수별 호수 분포

마을 호수	마을											계
	도마리	대야리	1리 속달동	속달 2리	속달 3리	둔대동	건건리	팔곡 1리	팔곡1리 정동	2리 팔곡동	기타	
1口		1					2				1	4
2	5	2				12	10			1		30
3	3	5	2	1		15	16	7	3	3	1	56
4	4	13	2	3	2	12	19	6	2	4		67
5	3	1	1	3	2	9	8	10	3	11		51
6	3	6		1	3	2	3	2	1	4		25
7			2	2	1		3	5		3		16
8	1	2		2	1		1		1	2		10
9			1	1						1		3
10				1	1							2
11			1	1								2
12				1	1					1		3
14	1		1		1							3
15				1								1
16				2								2
18				1								1
21					1							1
호총	20	30	10	20	13	50	62	30	10	30	2	277

발단이 되었던 만큼 광주농민항쟁도 예외는 아니었다. 근기지방에서 유일하게 광주농민항쟁이 일어났던 것은 서울과의 관계에서 바로 광주부가 갖는 특수한 위치때문이었다. 도성을 방비할 목적으로 수어청을 두었고, 수어청의 많은 군함을 환곡으로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광주부에서 북방면의 위치와 북방면 소재 주요 마을들을 보면 〈그림 3〉과 같다. 북방면은 크게 6개 마을 즉 도마교리, 대야미리, 속달리, 둔대리, 건건리, 팔곡리로 이루어지고 있다. 1903년에 작성된 『광주부 호적』과 비교해 보면, 도마리는 도마교리로, 대야리는 대야미리로, 속달2리·1리속달동·속달3리는 속달리로, 둔대동은 둔대리로, 건건리는 건건리로, 팔곡1리 정동·팔곡1리·2리 팔곡동은 팔곡리로 되었다.

호적에 원호 277호가 '10戶 1統'의 새로운 호적작성법에 의하여 등재되어 있다. 우선 『광주부호적』을 바탕으로 호구의 구성을 살펴 보면 <표 5>와 같다.

1903년 북방면의 원호와 인구 총수는 277호, 1,330구이다. 1호당 인구는 4.80구가 된다.⁽¹⁵⁾ 277호 가운데 74호가 '寄口' 및 '雇傭'인구로 227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제외하면 호당 인구수는 3.98구이다. 19세기에 일반적으로 보이는 단혼소가족형태이다.

여기서 '寄口'는 '현존인구'로 기재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일시적이 아닌 상당히 장기간 기거하고 있는 자로 보인다. 기구는 단신으로 혹은 전가족이 기거했을 것이고, 그들은 원칙적으로 분적, 분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호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서 고의로 누적하고 있는 낭호·술호 등의 협호였을 것이다. 호주의 친인척들은 '동거친속'으로 기재되고 있기 때문에 기구는 비혈연협인들이며, 주호가와 주노관계를 맺어 왔던 노비출신들이거나, 조선후기 이래 농민층 분해로 양산되고 있는 빈민들이었을 것이다. '雇傭' 또한 현존인구로 기재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임시적인 것이 아니고 적어도 1년 이상 혹은 그 이상 장기고 계속 고용되고 있는 자, 즉 '머슴'이었을 것이다.

호는 1구호로부터 21구호까지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18세기 이전의 호적대장의 예로 비추어 보면 호당 인구수는 많이 줄어 든 것이다. 호수가 가장 많은 것은 4구호로 67호, 24.2%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부부에 동거인 2인이라는 평균적인 호 구성을 암시하는 것이다. 1구호 4호는 모두 鰥夫戶다. 최대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호는 속달3리 제1통 제3호의 鄭益謨(36세, 本 東萊, 進士, 기와5간 초가3간 합8간)가다. 호주부부와 직

(15) 1825년의 대구호적대장 가운데 東上面, 西上面 2면의 1호당 인구수는 5.3~3.8구이며(崔在錫, 1974 「조선후기에 있어서 도시가족의 형태와 구성」 『인문논집』 19,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같은 해 鎭海縣의 동면, 북면, 서면 3면의 1호당 인구수는 3.1~3.4구이다(武田幸男, 1977 「19세기 진해현의 사회구조와 그 변동」 『학습원대학장 조선후적대장의 기초적연구- 19세기 경상도 진해현의 호적대장을 통해서 -』, 조사연구보고 No. 13). 두 곳의 호당 인구수는 술하노비 등을 포함한 수자이다. 두 곳의 호당 인구수의 차이가 도시와 농촌이라는 지역적 특성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두 곳 모두 부단위의 호 구성이 기본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북방면의 호 구성도 마찬가지로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계 가족 3인(子, 子婦, 女)이 동거하고 있고, 그 외 기구 3구(남 2구, 여 1구)와 고용 13구(남 6구, 여 7구)가 있다. 이처럼 호구수가 많은 이유는 2세대가 동거하고 있지만 기구와 고용인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이와는 달리 대가족형태를 취함으로써 호구수가 많은 예는 속달2리 제1통 제4호 鄭官默(82세, 本 東萊, 士. 기와6간 초가4간 합10간)가다. 그의 호에는 5세대(직계 4세대, 방계 1세대)가 동거하고 있으며, 고용 6구(남 3구, 여 3구)가 있다.⁽¹⁶⁾ 이로 보면 이 때에도 대체로 유력한 양반가들은 대가족형태를 취하거나 다수의 기구와 고용인을 거느림으로써 많은 호구수를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¹⁷⁾

한편 5구 이상의 호는 평균적 가족수 외에 친족이나 기구, 고용인구를 1구 이상 보유하는 호로 볼 수 있는데, 모두 120호로 43.3%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속달리(1리속달동, 속달2리, 속달3리)와 팔곡리(팔곡1리, 팔곡2리 정동, 2리 팔곡동)는 5구 이상의 인구를 가진 호가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속달리 경우는 43호 가운데 5구 이상의 보유호가 33호, 76.7%를 차지하고 있으며(1리 속달동 6호, 60%, 속달2리 16호, 80%, 속달3리 11호, 84.6%), 팔곡리도 70호 가운데 44호, 62.9%를 차지하고 있다(팔곡1리 17호, 56.7%, 팔곡1리 정동 5호, 50%, 2리 팔곡동 22호, 73.3%). 반면 둔대동과 건건리의 경우는 4구 이하의 호가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둔대동은 50호 가운데 39호(78%), 건건리는 62호 가운데 47호(75.8%)가 4구 이하의 호다.

그러면 이처럼 속달리와 팔곡리의 많은 호들이 평균 인구 이상의 인구수를 보유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마을별로 기구와 고용인 1구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호의 분포를 보면 아래 <표 6>과 같다.

원호 277호 가운데 74호(26.7%)가 보유하고 있는 기구·고용인수는 모

(16) 호주 정관묵, 子 圭贊(57세), 孫 喆辰(30세) 孫婦 全州 李氏(29세), 次孫 洛辰(19세) 孫婦 柒原 尹氏(19세), 侄 元朝(51세) 婦 慶州 朴氏(46세), 從孫 仁京(21세) 婦 呂興 李氏(22세), 雇傭 6口(남 3구, 여 3구).

(17) 정익모가와 정관묵가를 포함해서 현존인구 15인 이상을 보유하는 5 호는 모두 속달리 동래 정씨가문들이다.

〈표 6〉 마을별 기구·고용인수별 호수 분포

마을 기구· 고용인수	도마리	대야리	1리 속달동	속달 2리	속달 3리	둔대동	건건리	팔곡1리	팔곡1리 정동	2리 팔곡동	호수계
1		1		1		1	1	6	3	1	14
2	2		1	1	7	1		4		8	24
3			1	5				6	1	5	18
4		1		5	1				1	1	9
5					1						1
6				1	1						2
7			1		1						2
8				1							1
10	1			1							2
16					1						1
호수계	3	2	3	15	12	2	1	16	5	15	74

두 227명이다. 기구·고용인 1구를 보유하고 있는 호는 14호(18.9%), 2구를 보유하는 호는 24호(32.4%), 3구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호는 36호(48.7%)이다. 최고 16구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호는 속달3리 정의모가다.

마을별로 보면, 속달리는 전체 43호 가운데 30호(69.8%)가, 그리고 팔곡리는 전체 70호 가운데 36호(51.4%)가 1구 이상의 기구·고용인을 거느리고 있다. 특히 속달2리는 15호 가운데 13호가 기구·고용인 3구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속달리와 팔곡리의 경우, 반 이상의 호들이 평균 호구수 이상의 호 구성을 보이는 것은 바로 기구·고용인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면 각 마을에서 3구 이상의 기구·고용인을 보유하고 있는 호들은 어떤 호들일까. 그것은 호의 성격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마을별 호주의 성씨 분포를 분석하여 거주호의 구성과 그 성격을 살펴 보자.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마교리에는綾城 具氏와 密陽 朴氏가, 대야미리에는礪山 宋氏가, 속달리에는東萊 鄭氏가, 둔대리에는光山 金氏·靑松 沈氏·文化 柳氏·綾城 朱氏가, 건건리에는安東 張氏·昌寧 曹氏·淸

〈표 7〉 마을별 성씨 분포

마을 성씨	도마리	대야리	1리 속달동	속달 2리	속달 3리	둔대동	건건리	팔곡 1리	팔곡1리 정동	2리 팔곡동	기타	계
진주 강							2	1				3
능성 구	6											6
경주 김		3			1	4						8
광산 김		1	2			7				1		11
김해 김	1			2		1	2	1		1	2	10
언양 김	1											1
청풍 김							1					1
안정 나							1					1
의령 남								1				1
여흥 민								7	2	2		11
밀양 박	9	1				2	3	3	1			19
반남 박										1		1
상주 박								1				1
죽산 박				1								1
수원 백			1									1
대구 서										1		1
밀양 손								1				1
여산 송		20										20
청송 심		1				12		2				15
곡산 연							1					1
해주 오	1		1	1		1		5		3		11
원주 원	1											1
기계 유							2					2
문화 유						6						6
파평 윤					1	1						2
경주 이			1			1		2	4			8
광주 이	1					1				8		10
전주 이	1			1		1		2	2	1		8
교동 인							2					2
진주 임										5		5
평택 임										3		3
안동 장							9					9

〈표 7〉 계속

마을 성씨	도마리	대야리	1리 속달동	속달 2리	속달 3리	둔대동	건건리	팔곡 1리	팔곡1리 정동	2리 팔곡동	기타	계
인동 장		1										1
진주 장								1				1
정선 전										1		1
동래 정				10	1							11
연일 정								1				1
하동 정								1				1
창녕 조							12					12
풍양 조					1		1					2
능성 주		1			9	12						22
능주 주						1				1		2
강릉 최							1					1
경주 최				1								1
밀양 최			2	2								4
청주 최										1		1
예양 천			1									1
청주 한		1					25	1				27
창원 황									1			1
양천 허				1								1
남양 홍										1		1
풍산 홍			1									1
단양 피			1	1								2
호 총	20	30	10	20	13	50	62	30	10	30	2	277

州 韓氏가, 팔곡리에는 驪興 閔氏·海州 吳氏·廣州 李氏 등이 각각 大姓으로써 집성촌을 이루며 살고 있다. (18)

각 마을에 이러한 성씨들이 거주하게 된 연유는 앞서 살펴 보았듯이 그들의 선조가 조선시기에 과거 등으로 관직에 나갔다가 거듭되는 '士禍'나 '黨爭'을 겪으면서 파직되거나 실세한 이후 그 마을들에 퇴거했기 때문이었다.

(18) 일제시기와 전쟁의 대변동기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 마을들은 대성들 중심의 집성촌을 이루고 있다.

이를테면 속달리 동래 정씨의 경우, 세조·예종·성종년간에 관직에 나아갔던 鄭蘭宗(1433~1489, 字 國馨, 號 虛白堂)이 속달리에 퇴거하면서 속달리에 그 뿌리를 내리고 있다. 정란종의 3자 가운데 장남인 光輔와 차자인 光弼(1462~1538, 字 士勛, 號 守夫)이 속달리에 살게 되는데, 광필의 후손은 증손 芝衍 이후에 대가 끊기고 광보의 후손만이 그 대를 이어갔다. 따라서 속달리의 동래 정씨 호주들 10명은 대부분 광보 이후 12~14대에 해당되는 자들이다.⁽¹⁹⁾ 특히 정란종과 정광필이 이 곳에 묻히게 되고, 이후 鄭致和, 鄭載崙, 鄭錫五 등이 또한 이곳에 묻힘으로써 속달리는 동래 정씨 세장지가 되었고 그 후손이 집성촌을 이루게 되었다.

둔대리 안골에는 광산 김씨 호주 7명이 살고 있는데 모두 司醜直長公(諱, 英)派 후손으로 그들의 직업은 모두 '士'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둔대리 본마을에는 靑松 沈氏 호주 12명이 살고 있는데 이들은 세종의 장인이며 開國功臣 靑城伯 德符의 아들인 溫(시호 安孝, ?~1418)의 직계 후손들이다. 안효공파 후손들이 둔대리에 터를 잡게 된 것은 세종때 영의정이 되어 실권을 쥐었던 온이 1418년에 사은사로 명나라에 갔다고 그 동생 沚의 태종 병권장악 비판에 연루되어 귀국도중에 압송되어 수원에서 사사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12명의 직업 역시 모두 '士'로 기재되었는데 여전히 양반으로 행세했던 모양이다.

건건리에는 안동 장씨가 아랫삼천에서, 창녕 조씨는 후삼천에서, 청주 한씨는 창말에서 집성촌을 이루고 있는데, 특히 청주 한씨 경우 무려 25명의 호주가 창말에 집중 거주하고 있다. 이들이 창말에 살게 된 것은 16세기 말 선조대 이후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청주 한씨 19세 禮賢(1580~1661)이 창말에 살게 되면서부터이며, 그들은 예현으로부터 5~7대 후손들이다.⁽²⁰⁾ 그러나 이들 집안은 그리 현현한 집안이 되지 못했든지 25명의 호주 직업은 모두 농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팔곡1리에는 여흥 민씨 호주 7명이 살고 있다. 여말 선초 여흥 민씨 12세 閔大生(1372~1467, 증추원부사, 증 우의정)이 팔곡1리에 터를 잡았

(19) 『東萊鄭氏文翼公派譜』, 『鄭文翼公遺稿』 한국문집총간 제17집

(20) 『淸州韓氏參判公派譜』

(21) 『驪興閔氏世系譜』

고, 그 후손들이 광주, 죽산, 용인, 수원 일대에 퍼져 살게 되었다. 특히 팔곡리에는 16세 機(참봉, 증 좌통례)가 선학동에 터를 잡으면서 그 후손들이 살게되었으며, 호주 7명은 바로 機로부터 내려오는 23~24세 손들이다. (21)

각 마을의 대성들 가운데 당시에 '양반가'로 행세했던 성씨는 둔대리의 광산 김씨와 청송 심씨, 팔곡동의 광주 이씨와 여흥 민씨, 속달리의 동래 정씨와 능성 주씨 등이었는데, 특히 속달2리 동래 정씨가 가장 유력한 양반가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광주부의 주요 성씨들이 그랬듯이 북방면 각 마을의 대성들도 서로 혼인관계를 맺음으로써 자기 마을과 면에서 특별한 지위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의 <표 8>에서 3구 이상의 기구·고용인을 보유하고 있는 호는 모두 36호인데, 그 가운데 34호가 속달리와 팔곡리에 집중되어 있고(속달리 20호, 팔곡리 14호), 대야리와 도마리에 각각 1호가 있다. 속달리 20호 가운데는 당시 유력한 양반가로 행세했던 동래 정씨가 10호를 차지하고 있으며, 4구 이상의 경우에는 14호 가운데 동래 정씨가 8호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속달2리는 동래 정씨 14세 정란종(1433~1489), 15세 정광보, 정광필(1462~1538)의 후손들, 즉 27·28·29세 손들이 일가로서 집성촌을 이루고 있는데, 10호 가운데 무려 9호가 3구 이상의 기구 고용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팔곡리 14호 가운데는 팔곡리의 대성인 광주 이씨가, 여흥 민씨가, 해주 오씨가, 진주 임씨가, 평택 임씨가, 경주 이씨가 등과, 그리고 북방면의 대성인 청송 심씨가, 전주 이씨가 등이 포함되어 있다.

<표 8> 마을별 주요 호주의 기구·고용인 보유현황

마을	호주	본관	기구		고용		계
			남	여	남	여	
팔곡1리	김만복	김해	1	2	0	0	3
"	민영룡	여흥	1	2	0	0	3
"	심정택	청송	1	2	0	0	3
"	오지선	해주	1	2	0	0	3
"	이계보	전주	1	2	0	0	3
"	장윤일	진주	1	2	0	0	3

〈표 8〉 계속

마을	호주	본관	기구		고용		계
			남	여	남	여	
2리팔곡동	서병량	대구	0	1	0	2	3
"	이두봉	광주	1	2	0	0	3
"	이봉춘	광주	1	2	0	0	3
"	임휘진	진주	1	2	0	0	3
"	홍순정	남양	1	2	0	0	3
팔곡1리정동	이청근	경주	2	1	0	0	3
속달2리	김순오	김해	1	2	0	0	3
"	박재덕	죽산	0	0	2	1	3
"	정규창	동래	0	0	2	1	3
"	정진옥	동래	0	0	2	1	3
"	최원근	밀양	0	0	1	2	3
1리속달동	김용구	광산	0	0	1	2	3
대야리	김용대	광산	0	1	1	2	4
팔곡1리정동	이덕현	전주	2	2	0	0	4
2리팔곡동	임득현	평택	1	2	0	1	4
속달2리	정규석	동래	0	0	2	2	4
"	정규원	동래	2	0	1	1	4
"	정완진	동래	1	0	1	2	4
"	정하목	동래	0	0	2	2	4
"	최원실	밀양	2	1	0	1	4
속달3리	주충균	능성	2	2	0	0	4
속달3리	김부성	경주	2	3	0	0	5
속달2리	정관목	동래	0	0	3	3	6
속달3리	주홍중	능성	3	3	0	0	6
1리속달동	김용원	광산	1	2	1	3	7
속달3리	윤순진	파평	3	4	0	0	7
속달2리	정완목	동래	2	2	2	2	8
도마리	규윤조	능성	5	3	1	1	10
속달2리	정학목	동래	0	2	4	4	10
속달3리	정익모	동래	2	1	6	7	16

이상에서 보면 평균 호구수 이상의 호구를 보유하고 있는 호들은 기구·고용인을 적어도 3구 이상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며, 그러한 호들은 대체로 유력한 양반가로 행세해 온 가문들의 호들임을 확인할 수 있다. 속달리의 동래 정씨가와 능성 주씨가, 팔곡리의 광주 이씨가와 여흥 민씨가, 둔대리의 청송 심씨가와 광산 김씨가, 도마리의 능성 구씨가 등이 그 대표적인 가문들이었다.

4. 북방면의 경제구조

이제 북방면의 토지 소유과 경영구조를 중심으로 경제구조를 살펴 보자. 당시 북방면의 경제구조를 살펴 볼 수 있는 자료로는 『광주부 양안』이 있다.⁽²²⁾ 이 지역에서 양전은 1900년 6월 24일부터 7월 27일까지 실시되었다. 양전지도에 의하면 도마교리, 대야미리, 둔대리, 속달리, 팔곡리, 건건리 순으로 진행되었다(〈그림 4〉). 당시 양전관은 양무감리에 이종대(1899. 11. 11 임명), 양무학원은 정현조, 박인양, 김택기, 이용설 등이었다.

양전 직후 작성된 증초책을 바탕으로 1900년 9월 26일부터 정서과정에 들어가 初查 再查, 初書 再書, 初準 再準 三準 등의 과정을 거쳐 1901년 3월 10일에 정서를 완료하였다. 이 때의 조사학원은 홍성두였다.⁽²³⁾ 1901년 12월 양지아문의 기능이 정지됨에 따라 지계아문이 증초책을 인수하여 정서책을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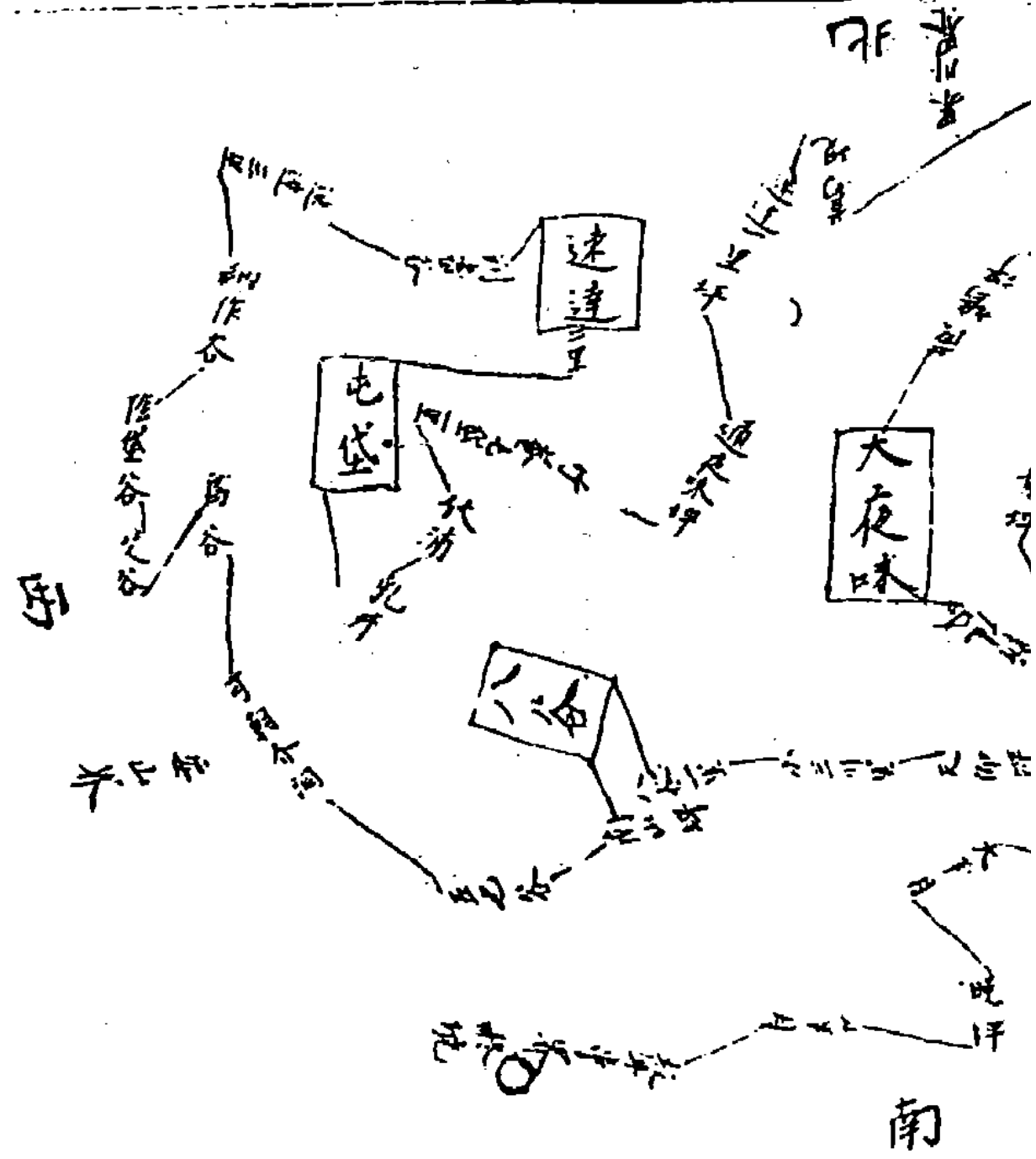
양지아문의 증초책 양안은 당시 양안의 유형 가운데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다. 양전 초기에 작성되었던 증초책 양안에서 보이는 납세자로서 ‘結名’ 혹은 ‘結戶’名은 없으며, 토지소유자와 경작자는 ‘시주’와 ‘시작’으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기재형식 상에서 보면 증초책과 정서책은 차이가 없다.⁽²⁴⁾

(22) 『廣州府 量案』北方 上, 『廣州府 量案』北方 下(규17041, 제33, 34책); 『京畿 廣州府北方面量案』(규17041, 제21책)

(23) 광무년간의 양전추진 과정, 양안작성 과정 등에 대해서는 왕현중, 「대한제국기 양전 지계사업의 추진과정과 성격」 『대한제국의 토지조사사업』 민음사, 1995를 참조하라.

(24) 광무양전과정과 양안의 작성과정, 양안의 성격, 기재 양식과 형태에 대해서는

圖地



〈그림 4〉廣州府北

우선 증초책 양안상에서 파악된 호수는 원호 270호, '査起戶' 409호이다. 그러나 정서책의 '査起戶'는 421호로 최종 집계되었다. 한편 1899년 『광주부읍지』에 의하면 실재호수는 449호이며, 양전보다 3년 뒤에 작성된 『광주부 호적』상의 원호 총수는 277호다. 이상의 통계에서 그 실체를 확인할 수 호는 호적상의 원호 277호, 양안상의 사기호 421호이다. 양전에 의해 144호가 더 실사된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사기호 421호를 대상으로 그들의 토지소유와 경영실태를 분석함으로써 북방면의 사회경제구조를 살펴 보고자 한다.

우선 마을별로 원호 277호와 사기호 421호의 분포를 보면 아래 <표 9>와 같다. 즉 각 마을의 사기호는 원호 이상으로 적게는 12호부터 많게는 57호까지 더 파악되고 있다. 둔대리와 팔곡리가 어느 마을보다도 실재호수가 원호수보다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둔대리는屯터가 있던 마을로서 신역을 지고 있던 牧戶이 많았는데 그것들이 이제 일반 민호와 다름 없이 호세부과 대상호로서 파악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팔곡리는 <표 8>에서 보듯이 원호들이 어느 마을보다 畝口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바, '협

<표 9> 마을별 원호와 양안상의 사기호(실재호) 분포

호적상의 원호 수		양안상의 사기호 수	
도마리	20	마분평, 숙곡	36
대야리	30	대야동	42
속달리	43	속달, 속달1, 2, 3리	57
둔대리	50	둔대, 둔대내, 둔대2리, 음대곡	107
건건리	62	건건동, 건건리, 대삼천, 건건전평	69
팔곡리	70	팔곡남산, 건지동, 팔곡2리	110
계	277	계	421

다음 논문을 참조하라. 왕현종, 「대한제국기 量田 地契事業의 추진과정과 성격」; 이영호, 「光武量案의 기능과 성격」; 최윤오 이세영, 「光武量案과 時主의 실상」 『대한제국의 토지조사사업』 1995 민음사

〈표 10〉 대야리 호적상의 호주와 양안상의 가호주

호적상의 호주, 집 칸수 (소유 여부: 己有, 借有)	양안상의 가호주, 집 칸수	
	自家 소유자	借家 보유자
김덕희, 초가 10칸(己) 김상우, 초가 7칸(己) 김상운, 초가 3칸(己) 김영관, 초가 6칸(己) 김용대, 초가 12칸(己)	김칠봉, 초가 5칸 김팔록, 초가 5칸 김학준, 초가 5칸	김정월, 초가 2칸 김정월, 초가 2칸 김팔록, 초가 3칸
박의호, 초가 5칸(己)	박금돌, 초가 2칸	
송광천, 초가 5칸(己) 송극호, 초가 3칸(己) 송만원, 초가 3칸(己) 송문호, 초가 3칸(己) 송배원, 초가 5칸(己) 송병섭, 초가 3칸(己) 송성호, 초가 5칸(己) 송수영, 초가 6칸(己) 송순호, 초가 6칸(己) 송영벽, 초가 4칸(己) 송영복, 초가 3칸(己) 송영순, 초가 3칸(己) 송영일, 초가 2칸(己) 송영하, 초가 4칸(己) 송영학, 초가 5칸(己) 송원호, 초가 4칸(己) 송종정, 초가 3칸(己) 송종학, 초가 4칸(己) 송창호, 초가 5칸(己) 송태원, 초가 5칸(己)	송목용, 초가 5칸 송삼쇠, 초가 5칸 송소종산, 초가 3칸 송소종석, 초가 3칸 송순봉, 초가 5칸 송엇개, 초가 3칸 송엇매, 초가 3칸 송엇산, 초가 5칸 송엇쇠, 초가 5칸 송옥단, 초가 3칸 송인복, 초가 3칸 송종석, 초가 7칸 송장손, 초가 4칸 송칠쇠, 초가 3칸 송태매, 초가 3칸 송태봉, 초가 3칸	송도치, 초가 5칸 송삼쇠, 초가 3칸 송소엇산, 초가 3칸 송소엇산, 초가 2칸 송엇봉, 초가 3칸 송오쇠, 초가 2칸 송종득, 초가 5칸 송종산, 초가 3칸 송치수, 초가 2칸 송천길, 초가 3칸 송태복, 초가 7칸 송태산, 초가 2칸
심신태, 초가 3칸(己)		심주감, 초가 3칸
장치환, 초가 3칸(己)	장을성, 초가 3칸	
주나봉, 초가 3칸(己)		
한복이, 초가 3칸(己)	조옥이, 초가 4칸	나오룡, 초가 3칸 이문백, 초가 3칸 최봉우, 초가 2칸 피선능, 초가 2칸

호' 형태로 존재했던 기구들이 분호되어 독립호로서 파악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반해 속달리의 경우는 기구보다는 '고용인' 즉 머슴을 고용하는 원호들이 많았기 때문에 분호되어 독립호로 파악될 '협호'는 적었겠지만 상대적으로 부자형제숙질간의 합적호가 많아서 各籍分戶되어 독립호로 파악되는 호들이 있었기 때문에 역시 실재호수가 늘어났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북방면의 실재호 421호는 양안상에서 어떻게 파악되고 있었는가. 대야리의 경우를 통해서 확인해 보자.

양안과 호적은 3년 간격을 두고 있다. 3년 사이에 이사, 사망 등으로 인한 약간의 거주호의 변동이 있었을 것이다. 양안상의 가주는 41명인데 호적상의 호주는 30명이다. 가주 41명 가운데 30명만이 호주로 등재된 것이다. <표 7>에서 보듯이 대야리는 여산 송씨의 집성촌이라고 할 만큼 송씨가 많이 살고 있는데, 송씨의 경우 양안상의 가주 28명 가운데 20명만이 호주로 등재되었다. 호적상의 호주 20명이 모두 자가소유자인 것으로 볼 때 양안상의 자가소유자 16명과, 차가보유자 12명 가운데 4명이 호주로 등재된 것이다. 4명만이 호주로 등재되었던 것은 그들이 자가소유자로 성장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토지소유와 경영에서 자가소유자와 차가보유자를 비교해 보면, 전자의 평균 소유면적은 1.1정보, 경영면적은 1.39정보인데 비해 후자의 평균 소유면적은 0.4정보, 경영면적은 0.52정보에 불과하다. 차가보유자들은 거의 빈농으로서 각종 조세를 부담해야 하는 원호가 될 수 없었던 것이다. 갑오개혁 이후 '時存戶' 즉 실재호 모두에 호세를 부과하기 위해 실재호를 파악했지만 실질적으로 호세를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빈민호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아예 호적에 등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²⁵⁾

그런데 양안과 호적 사이에 3년의 시간차가 있다고 하지만 양안상의 가주 이름과 호적상의 호주 이름이 일치하는 사람은 한명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호주의 성과 양안상의 가주의 성이 거의 일치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25) 탁지부는 훈령 제6945호로 1907년 가을 호세부터 1호당 년 30전의 호세를 신조사호에게 과세하되, 단 증가된 호수의 10분의 2는 극빈자로 간주하여 과세호로부터 제외하고, 그래도 전체 호세액이 구세액에 비해 2배 이상에 달하는 면의 경우에는 그 납세총액을 2배로 제한하고 그것을 그 면의 호수로 평분해서 부과하라고 명령하고 있다.

동일인거나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한편 호적명과 족보명은 거의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호주의 이름은 실명인 셈이다. 따라서 호주는 양안상에서 실명 대신에 차명을 쓰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양안상의 가주의 이름은 어떤 성격의 이름인가. 첫째, 대록명일 가능성이 있다. 즉 호주가 조상이나 자식들 혹은 혈연 가솔들의 이름을 빌어 대록하는 경우다.⁽²⁶⁾ 그러나 송씨들의 경우를 보건데 그런 경우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둘째, ‘戶名’ 혹은 ‘呼名’일 가능성이 있다. ‘戶名’은 남세자명으로 파악되었던 ‘결호’ 혹은 ‘결명’의 이름이었으며, 呼名은 흔히 아명에서 시작된 호칭명이었다. 여기서 가호주 이름의 대부분은 그 형태로 보아 戶名 혹은 呼名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주들, 토지의 경우 ‘시주’ 혹은 ‘시작’의 이름이 모두 호명은 아니며, 일부 실명도 보인다. 그들은 굳이 실명을 기피하고자 호명을 사용했던 것은 아니었다. 실명이든 호명이든 그 이름 자체가 가호와 토지에 대한 권리행사의 요건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은 어떤 이름도 사용할 수 있었고, 그것이 일반 관행이었던 것이다.

이로 보면 북방면 거주호 421호의 호주들은 양안에서 실명보다는 戶名이나 呼名을 쓰면서 家主, 그리고 시주와 시작으로서 실재하고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그런데 양안상의 전체 인물은 856명이다. 그들 가운데 성명이 호적명과 일치하는 자는 50명뿐이다. 또한 호적상의 원호를 포함한 전체 거주호 421호의 호주들이 대부분 차명을 쓰고 있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고, 호주만이 농가세대주가 되는 것은 아닐 것이지만 양안상의 인물 856명은 호주 421명을 훨씬 웃도는 숫자이다. 그렇다면 양안상의 인물 856명(시주 670명, 시작 739명)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호적상의 원호 277호의 전체 인물은 기구와 고용인 227명(남자 97명,

(26) 양안과 호적상의 성명이 일치하는 자 50명 가운데, 호주가 아들 명의로 대록하는 자가 8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호주들은 대체로 나이가 50이 넘어 장년의 자식명의로 대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팔곡리 호주 강위팔(본 진주, 64세, 농업)은 그의 장자 강순경(38세)의 이름으로 양안상에 오르고 있는 것이다.

여자 130명)을 포함해서 1,330명이었는데, 그 가운데 남자가 706명이었다. 여기에 원호 외에 추가로 파악된 144호(사기로 421호에서 원호 277호를 제외한 것)의 호주, 그리고 얼마간의 타면 거주자가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양안상의 인물 856명은 북방면의 거주호 421호의 남자들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 문제는 856명을 각각 하나의 독립적인 농가세대로 볼 수 없다는 점이다. 때문에 거주호 421호의 토지소유와 경영 규모, 그들의 경제생활과 생활수준은 856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이상으로 상향조정해 보아야 할 것이다(왜냐하면 구호 421호의 호주 뿐만 아니라 그 자식(男) 혹은 '기구'들이 양안상의 '시주'와 '시작'으로 등장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각 마을 사람들은 거의 자기 마을에 딸린 들의 토지를 소유하거나 경작하고 있다. <그림 3>에서 반월천 하류에 위치하고 있는 팔곡리 근처와 그 지류 상류에 위치하고 있는 도마교리와 대야리 근처에 비교적 경지가 많은 편이다. 반면에 수리산 골짜기 깊이 위치하고 있는 속달리 근처는 밭이 많은 편이다. 양전지도와 양전시 입회했던 지심인에 의하면 양전은 도마교리에 딸린 들로부터 시작하여 시계방향 반대로 한바퀴 돌아 팔곡2리의 반월전평, 대소반월, 팔곡개명평에서 마치고 있다.

우선 5정보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들을 살펴 보면 <표 11>과 같다.

22정보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최대 지주 고성단은 주로 도마교리와 건건리 일대에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부재지주이다. 윤경성, 전천쇠, 정복금, 조돌명, 최오돌, 오의동, 이흥득, 송종석 등은 가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인근 타면에 거주하는 자들로 보인다. 다만 도마교리 근처에 토지를 갖고 있고 초가 2채를 보유하고 있는 오의동, 대야리 일대에 토지를 갖고 있고 초가 9채나 보유하고 있는 송종석은 부재지주는 아닌 것 같다. 속달리의 정명산, 정순길, 정순쇠, 정삼철, 정용득 등은 속달리에 집중하여 거주하고 있는 동래 정씨가 인물들로 보인다. 도마교리의 구윤립은 능성 구씨의 인물로 보이며, 팔곡리의 민만길은 여흥 민씨가, 이팔월은 광주 이씨의 사람일 것으로 추측된다. 건건리의 한신남은 청주 한씨가였을 것이다. 마을에서 대성으로서 유력한 양반가들이 여전히 지주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

〈표 11〉 5정보 이상의 토지소유주(면적 단위: 정보)

성명	소유지	대여지	경작지	거주지, 가옥
1. 고성단	22.17	0.27	21.90	(도마교리, 건건리)
2. 정명산	19.33	3.01	16.32	속달리, 와가1채(15칸) 초가16채
3. 윤경성	10.35	0.00	10.35	(팔곡리)
4. 정순길	10.19	2.88	7.31	속달리, 와가1채(7칸)
5. 전천쇠	10.18	0.18	10.00	(도마교리, 건건리)
6. 정복금	10.08	5.76	4.32	(도마교리)
7. 박원순	9.32	3.86	5.46	대야리, 초가4채
8. 정순쇠	8.61	2.60	6.01	속달리, 초가6채
9. 조돌명	8.59	0.00	8.59	(팔곡리) 초가5채
10. 정삼철	7.68	1.82	5.86	속달리, 와가1채(10칸) 초가2채
11. 구윤립	7.41	0.22	7.19	도마리, 초가1채(8칸), 초가3채
12. 최오돌	7.33	2.41	4.92	(둔대리)
13. 오의동	7.15	0.88	6.27	(도마교리) 초가2채
14. 박여삼	7.10	0.00	7.10	둔대리, 초가1채(5칸), 초가10채
15. 이팔월	6.82	0.00	6.82	팔곡리, 초가1채(7칸), 초가10채
16. 정용득	6.66	1.77	4.89	속달리, 와가2채(22칸) 초가3채
17. 이흥득	6.58	0.10	6.48	(도마교리)
18. 송종석	6.38	0.17	6.21	(대야리) 초가9채
19. 임도분	5.74	0.00	6.07	팔곡리, 초가1채(7칸)
20. 한신남	5.63	0.00	5.63	건건리, 초가1채(10칸), 초가4채
21. 민만길	5.05	0.00	5.51	팔곡리, 초가1채(7칸)

이다.

그런데 이들은 소유지를 대여하기 보다는 거의 직접 경작하는, 이른바 작지주 혹은 '경영형 지주'로 나타나고 있다. 그들이 경영형 지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奇口와 雇傭人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표 8〉과 〈표 11〉을 비교해 보면 확인할 수 있다.

〈표 8〉는 원호 가운데서 기구·고용인 3구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호주들이다. 이들은 〈표 7〉에서 보듯이 집성촌의 대성으로서 유력한 양반가의 호주들이다. 양안상에서 호적명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표 11〉의 인물들과 동일인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표 8〉과 〈표 11〉을 비교해 보면

〈표 12〉 북방면의 토지소유, 경작 면적의 분포(단위: 정보)

구 분	소 유			경 작		
	인 원	면 적	평 균	인 원	면 적	평 균
0.01 ~ 0.5	385	80.52	0.21	423	92.17	0.22
0.5 ~ 1.0	129	92.72	0.72	148	109.93	0.74
1.0 ~ 1.5	54	67.30	1.25	60	73.50	1.23
1.5 ~ 2.0	33	55.32	1.68	36	60.91	1.69
2.0 ~ 3.0	30	71.48	2.38	32	75.99	2.37
3.0 ~ 5.0	18	68.89	3.83	22	86.44	3.93
5.0 ~ 10.0	15	96.05	6.40	15	100.51	6.70
10.0 ~ 20.0	5	60.13	12.03	2	26.67	13.34
20.0 ~ 50.0	1	22.17	22.17	1	21.90	21.90
50.0 ~ 100	0	0.00	0	0	0.00	0
	670	614.58	0.92	739	648.02	0.88

* 비고: · 대지를 제외한 것임.

· 1정보 = 9.168평방척으로 환산

· 전체 경작지가 소유지보다 많은 것은 위토(仁陵位土 등)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마을과 성씨 분포에서 거의 일치하고 있는 데서 동일인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표 11〉의 지주들이 5정보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면서 직접 경작할 수 있었던 것은 기구·고용인 3구 이상, 특히 그 가운데 남자 노동력 1인 이상을 항상적으로 고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즉 이들은 장기고용노동으로 '머슴'을 고용하여 자작 '경영형 지주'들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테면 속달리 동래 정씨가들은 전형적인 자작지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북방면 전체의 토지소유와 경영 구조를 살펴 보자.

시주 670명의 평균 소유면적은 0.92정보이며, 시작 739명의 평균 경작지는 0.88정보이다. 시주 670명 가운데 385명, 57.5%가 0.5정보 이하를 소유하고 있으며, 시작 739명 가운데 423명, 57.2%가 0.5정보 이하를 경작하고 있다. 소유와 경영에서 모두 하강분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소유규모 이상으로 경영을 확대하고 있는 농민들도 보이기에는 하나 매우 미미하며, 또한 그 경영규모도 적어서 부농경영으로 보기 어렵다.

〈표 13〉 북방면의 소유와 경영을 통해서 본 농민층 구성(면적단위: 정보)

		경영											계
		A	B	C	D	E	F	G	H	I	J	K	
소유	0	0	0.1	0.5	1.0	1.5	2.0	3.0	5.0	10.0	20.0	50.0	
			-0.5	-1.0	-1.5	-2.0	-3.0	5.0	-10.0	-20.0	-50.0	-100	
a	0	107	65	12	1	1							186
b	0.1 - 0.5	8	353	17	5	2							385
c	0.5 - 1.0	1	3	118	5	1	1						129
d	1.0 - 1.5	1	2	1	48	2							54
e	1.5 - 2.0				1	28	4						33
f	2.0 - 3.0					2	27	1					30
g	3.0 - 5.0							18					18
h	5.0 -10.0							2	13				15
i	10.0 -20.0							1	2	2			5
j	20.0 -50.0										1		1
k	50.0 -100												0
	계	117	423	148	60	36	32	22	15	2	1	0	856

* 비고: 대지를 제외한 것임

소유과 경영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농민층의 계급구성을 살펴 보자.

우선 107명(A a, 12.3%)은 대지 혹은 가옥만을 보유한 자들이다. 이들은 농민들이라 보기 어렵고, 농업 외의 수입에 의해서 생계를 유지했을 것이다. 경작형태별로 구분해 보면, 순소작농은 a구간의 186명에서 107명

을 제외한 79명으로, 전체 농민 749명(전체 856명에서 대지나 가옥만을 보유한 107명을 제외한 것)의 10.5%를 차지하고 있다. 자작농은 대각선란에 위치한 자들로서 592명(Bb, Cc, Dd, Ee, Ff, Gg), 79.0%로 압도적으로 많다. 자소작농은 대각선 우상란에 위치한 자들로서 117명, 15.6%이며, 소자작농은 대각선 우하란에 위치한 자들로 19명, 2.5%이다. 전체적으로 소작농민이라고 할 수 있는 자들은 순소작농과 자소작농민인데, 모두 117명, 15.6%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북방면의 농민들은 거의 자작농이다.

다음은 농가경영 내용을 통하여 실질적인 농민층의 계급구성을 추정해 보자. 이 시기의 농가경영을 보여주는 자료는 없기 때문에 1907~1910년경의 농민들의 농업 경영구조와 농가 수지 실태에 비추어 추정해 보기로 하자.

먼저 <표 14>의 경기도 농업생산구조에서 안산군(1906년 북방면은 안산군으로 편입됨)을 보면, 이곳의 농업생산력 수준은 경기도 전체에서 중위권에 들고 있다. 농산물 생산액 구성에서 쌀보다는 보리와 콩의 비중이 크며, 쌀은 다른 군에 비해서 낮은 편이다. 쌀의 상품화는 거의 이루지지 않고 있으며, 특용작물의 생산도 저조한 것으로 보아 상업적농업도 부진한 편이다. 토지생산성도 낮기 때문에 주로 노동생산성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경영의 확대는 많은 가족노동력, 기구와 고용인의 고용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농업생산력 수준에서 경영구조와 농가수입에 의해 농민층을 구분해 보자. 우선 <표 15>의 상농과 하농의 구분은 가족노동력, 고용인과 농우 소유 여부, 경작지의 구성과 규모, 농업경영 그리고 생산의 결과 얻은 전체 수입에서 기본적인 지출을 뺀 수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매우 현실적인 구분으로 보인다. 물론 이들 요소들 각각에 의해서 구분해 볼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 일률적으로 상농으로 혹은 하농으로 구분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상농과 하농의 구분은 그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지역마다의 암묵적인 통념이 반영된 현실성있는 구분이었으므로 생각된다.

전체적으로 볼 때 지주를 포함한 상농은 하농에 비해 2배 이상의 가족노동력을 보유하고 아울러 1인 이상의 장기 고용노동력 즉 '머슴' 등을 고용

〈표 14〉 경기도 농업생산구조

	농산물생산액구성					농업생산력지수				쌀의 상품화 지수
	쌀	보리류	콩류	잡곡	특용 작물	토지 생산성	노동 생산성	농가호 수/농 우수	저수 지수	
경기인천	83.1	9.3	5.4	1.5	0.7	4.28	9.69	2.54	12	-116
수원	81.8	5.4	11.6	0.8	0.4	6.92	16.93	3.70	3	37
광주	84.2	5.4	6.1	2.9	1.4	6.05	10.38	4.59	3	7
개성	76.4	7.5	8.2	6.5	1.3	4.47	7.02	3.36	0	-108
양평	83.3	6.8	5.6	3.2	1.1	12.10	16.67	2.49	4	41
강화	86.6	6.1	5.5	0.2	1.6	5.18	8.52	4.09	11	-39
여주	83.9	6.9	6.3	1.4	1.6	7.25	11.77	3.03	0	27
장단	74.3	6.7	8.7	9.6	0.7	6.71	10.06	3.22	24	-14
남양	89.9	5.4	3.8	0.6	0.4	5.22	9.45	3.06	2	8
용인	62.4	12.8	15.9	6.0	2.8	7.32	13.55	3.67	0	21
파주	67.2	12.8	11.5	6.8	1.6	5.49	7.92	4.49	2	-70
이천	88.9	4.5	4.8	1.0	0.8	8.58	17.68	3.23	1	55
풍덕	81.2	5.5	7.2	4.6	1.5	4.64	15.74	2.12	4	29
포천	44.4	19.3	19.6	15.1	1.6	5.34	7.47	2.81	4	-124
죽산	87.0	4.8	6.7	1.0	0.5	5.09	12.99	3.82	3	39
안산	72.3	15.8	11.1	0.6	0.2	4.86	10.20	3.19	10	3
삭영	24.6	15.7	30.6	22.5	6.6	4.71	6.64	-	1	-401
안성	79.5	10.7	7.4	0.9	1.5	6.38	11.44	3.02	15	-3
고양	85.7	7.6	5.3	1.1	0.3	10.05	15.47	2.98	0	37
가평	55.1	13.4	15.4	11.2	4.9	5.12	4.05	3.62	1	-218
통진	85.3	6.7	6.8	0.7	0.6	5.07	9.99	2.77	0	15
부평	76.7	11.6	9.1	1.8	0.7	3.43	8.39	3.27	3	-13
김포	82.9	8.2	7.7	0.8	0.4	3.22	11.82	2.35	0	29
영평	49.1	17.3	13.1	18.2	2.4	4.49	10.23	3.32	1	-46
마전	40.3	19.0	21.8	16.5	2.3	8.11	8.99	2.21	1	-178
교하	88.8	4.8	4.9	1.1	0.4	7.99	21.72	1.89	4	60
음죽	91.3	4.6	3.3	0.3	0.5	8.62	22.91	3.18	2	67
진위	84.2	6.5	7.6	0.4	1.3	5.66	11.98	3.78	5	31
시흥	81.1	7.5	9.1	1.9	0.3	4.96	11.54	3.37	4	8
적성	39.3	19.0	23.0	17.3	1.3	3.78	6.15	6.36	1	-218

〈표 14〉 계속

	농산물생산액구성					농업생산력지수				쌀의 상품화 지수
	쌀	보리류	콩류	잡곡	특용 작물	토지 생산성	노동 생산성	농가호 수/농 우수	저수 지수	
경기과천	74.0	10.3	11.0	3.1	1.6	4.26	8.29	2.63	9	- 57
연천	45.7	14.6	21.1	17.7	0.9	4.88	6.80	3.33	0	-206
양지	83.8	5.7	6.9	0.8	2.7	7.15	14.23	3.98	2	34
양성	79.6	9.9	8.7	0.2	1.6	3.24	10.27	3.64	3	14
양천	81.9	7.8	6.5	3.5	0.4	4.73	12.37	2.78	3	28
교동	89.1	3.7	6.9	0.1	0.2	6.44	16.62	3.69	2	48

*출전: 『朝鮮總督府統計年報』 1909~1911년판 및 『朝鮮農務彙報 第3』(1912)에 의
해 작성.

비고: · 각 작물의 단위가격은 다음과 같다. 쌀(식) 9.67원, 콩(식) 4.95원, 팥
(식) 6.20원, 보리(식) 3.10원, 밀(식) 5.16원, 쌀보리(식) 4.11원, 귀리
(식) 2.43원, 밤(식) 4.70원, 피(식) 2.76원, 조(식) 3.94원, 수수·옥수
수(식) 3.72원, 면화(관) 0.78원, 삼베(관) 1.21원, 모시(관) 0.96원, 담
배(관) 0.70원, 깨(식) 6.98원.

· 農牛數는 朝鮮新聞社編 『南鮮發達史』(1913) pp.268~278에 따른 것으로
1911년의 숫자임.

· 저수지數는 한국 농상공부 농무국편 『저수지調查書第一』(1909)에 따른 것
으로 1908년의 조사.

하고 있다. 더욱이 최대의 노동력이라 할 수 있는 농우를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높은 농업노동력을 바탕으로 대부분 소유지를 자작하고 있는데, 그
경작규모는 1.28정보로부터 4.5정보에 이르고 있다. 자작상농으로 부농경
영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하농은 가족노동력도 충분치 않으며,
열악한 소유지를 차경지로 보완하여 경영을 확대하지만 그 경작규모는 중·
남부지방의 경우 최대 0.7정보이며, 북부지방의 경우는 2.0정보에까지 미
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대체로 소자작농이다. 상농의 경영자본은 대부분
종자대와 노임으로 지출되고 있다. 그리하여 상농은 상당한 이윤을 남기고
있음에 반하여 하농은 노임수입을 보태도 수지상태는 열악하여 단순재생산
도 어려운 형편이다. 이러한 하농은 수입부족을 대부분 지주들의 고리성 부

〈표 15〉 농업경영구조와 농가수입(면적단위: 정보)

지역	구분	가족수			고용인			가축	
		노동	비노동	계	남	여	계	소	닭
충남 공주군 남부면 주미리	① 상농	6	3	9	2	2	4	1	4
충남 공주군 목동면 대산리	② 하농	4	0	4	0	0	0	외양소 1	2
경기도 수원군 북부면 동촌	③ 상농	4	4	8	1	0	1	1	5
	하농	2	2	4	0	0	0		3
전라도 광주군 와곡면 상림	④ 상농	2	5	7	1	0	1	1	3
	하농	2	4	6	1	0	1		3
전라도 해남군 우수영	⑤ 상농	1	7	8	2	0	2	1	5
	하농	3	2	5	0	0	0	0	5
강원도 춘천군 남내면 하퇴계리	⑥ 상농	5	15	15	2	1	3	1	3
	하농	1	3	4	0	0	0	0	0
황해도 해주군 천결면 동현	⑦ 상농	5	5	10	1	0	1	1	50
황해도 해주군 월곡면 상림동	⑧ 하농	4	2	6	0	0	0	0	5
경상남도 진주군 대안면 삼동	⑨ 상농	2	6	8	2	0	2	3	6
	하농	2	2	4	0	0	0	0	0
평안남도 강서군 대평신동	⑩ 상농	4	1	5	0	0	0	1	10
	하농	4	1	5	0	0	0	1	10

〈표 15〉 계속

지역	구분	소유지				대여지				차경지				경작지			
		논	밭	택지 기타	계	논	밭	택지 기타	계	논	밭	택지 기타	계	논	밭	택지 기타	계
①	상농	2.4	0.6	0.1	3.1	0.8	0	0	0.8	0	0	0	0	1.7	0.6	0	2.3
②	하농	0	0.26	0.02	0.28	0	0	0	0	0.4	0	0	0.4	0.4	0.28	0	0.68
③	상농	0.6	0.8	0	1.4	0	0	0	0	1.4	0	0	1.4	2.8	0	0	2.8
	하농	0	0	0	0	0	0	0	0	0.6	0.1	0	0.7	0.6	0.1	0	0.7
④	상농	1.5	0.27	1.05	2.82	0.5	0	0	0.5	0	0	0	0	1	0.27	0.01	1.28
	하농	0.46	0.14	0.35	0.95	0	0	0	0	0	0	0	0	0.46	0.14	0	0.6
⑤	상농	1.05	1.1	0	2.15	0	0	0	0	0	0	0	0	1.05	1.1	0	2.15
	하농	0	0.24	0	0.24	0	0	0	0	0	0.25	0	0.25	0	0.49	0	0.49
⑥	상농	7.5	3.2	0	10.7	7.3	2.0	0	9.3	0	0	0	0	0.2	1.2	0	1.4
	하농	0	0.8	0	0.8	0	0	0	0	0	0.8	0	0	0	1.6	0	1.6
⑦	상농	2.0	2.5	5	9.5	0	0	0	0	0	0	0	0	2.0	2.5	0	4.5
⑧	상농	0	0	0	0	0	0	0	0	0.7	1.1	0	1.8	0.7	1.1	0	1.8
⑨	상농	2.8	0.6	0	3.4	1.2	0	0	1.2	0	0	0	0	1.6	0.6	0	2.2
	하농	0.08	0	0	0.08	0	0	0	0	0.4	0.2	0	0.6	0.48	0.2	0	0.68
⑩	상농	0.2	1.8	1.0	3.0	0	0	0	0	0	0	0	0	0.2	1.8	0	2.0
	하농	0	0	0	0	0	0	0	0	0.2	1.8	0	2.0	0.2	1.8	0	2.0

<표 15> 계속

지역	구분	농업경영자본(단위: 원)						
		종자대	비료대	雇人給	농구 수선비	春蠶費	가축 사육비	계
①	상농	11.810	10.100	70.000	4.000	0	4.000	99.910
②	하농	2.860	10.000	1.500	2.000	0	5.500	21.860
③	상농	7.660	1.750	40.000	4.000	0	15.800	69.210
	하농	1.700	0	0	1.200	0	0.500	3.400
④	상농							
	하농							
⑤	상농							
	하농							
⑥	상농	3.450	0	11.800	0	0	4.000	19.250
	하농	3.620	0	0	0.200	0	0	3.820
⑦	상농	10.800	8.000	20.000	5.000	0	10.000	53.800
⑧	하농	0	0	0	지주부담	0	0	0
⑨	상농	11.960	52.000	131.580	0	0	30.340	215.880
	하농	3.440	14.440	14.160	0.600	0	4.000	36.600
⑩	상농	1.000	0	0	1.000	1.000	7.000	10.000
	하농	0	0	0	1.000	1.000	7.000	9.000

〈표 15〉 계속

지역	구분	생활비 지출(단위: 원)				총수입(원)		총지출 (원)	비고(원)
		식비	피복비	잡비	계	수입	노임		
①	상농	127.000	54.000	36.000	217.000	407.300		359.760	+47.540
②	하농	12.000	30.000	30.500	98.920	154.445	33.000	170.280	-15.835
③	상농	163.038	32.000	20.500	215.538	302.788	15.000	297.828	+4.960
	하농	47.800	10.500	5.850	64.150	71.900		70.900	+1.000
④	상농					195.090		188.060	+7.030
	하농					77.130		80.844	-3.714
⑤	상농					243.910		234.763	+9.147
	하농					70.045		78.700	-8.655
⑥	상농	155.250	21.000	29.200	205.450	310.450		292.600	+17.850
	하농	19.630	2.050	4.920	26.600	22.900	4.000	32.690	-9.790
⑦	상농	208.000	50.000	41.700	299.700	414.250		390.550	+23.700
⑧	하농					67.310		84.400	-17.090
⑨	상농	267.310	33.500	49.300	350.110	652.501		632.101	+20.400
	하농	45.580	8.500	12.300	66.380	106.497	31.230	107.858	-1.361
⑩	상농	69.300	11.000	18.400	98.700	150.300		126.380	+23.920
	하농	40.200	8.000	14.400	62.600	80.550		76.400	+4.150

*비고: 『朝鮮農會報』 4권 2-8호, 5권 1-3호: 「小作農民에 關한 調査」(朝鮮總督府 取調局)에 의하여 작성.

· 수입의 대부분은 농작물 판매수입이고, 그 다음이 노임수입이며, 부업수입은 미미함. 지출의 대부분은 생활비가 차지하고, 농업자본은 매우 적음. 지출액은 거의 경상비 지출로서 관혼상제 같은 임시의 경비는 계산되지 않음. 소작농민의 1개 년간의 수지상태는 열악하여 항상 수입부족을 초래한다. 수입부족은 대부분 지주 기타 고리의 부채에 의해서 보충하고 이듬해의 수확 또는 노동력으로 갚는다. 그러나 매년 부채의 증가를 면치 못한다.

채에 의해서 보충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고, 이듬해의 수확 또는 노동력으로 갚게 되었을 것이다. 결국 하농은 빈농으로서 반농반프로농민인 것이다.

북방면과 가까운 수원군 북부면 동촌의 농민경영을 보면, 상농은 자소작상농으로서 2.8정보를 경작하고 있으며 하농은 순소작농으로서 0.7정보를 경작하고 있다. 상농의 경우 고용노동으로 인하여 노임지출이 경영자본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상농의 수입은 전국적으로 볼 때 중위권에 속하며 노임수입으로 보충함으로써 약간의 이윤을 남기고 있다. 만일 관혼상제로 인한 임시의 지출이 있게 되면 수입부족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하농은 가족노동력만에 의해서 농사를 짓고 있고, 비료대나 노임지출이 없다. 수지는 적자이며, 따라서 노임수입이나 부채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경작규모가 농민층 구분의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지만 조선후기 이래로 농지소유규모와 경영규모가 농민층 구분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 왔고 또한 가족노동력 규모, 고용인과 농우 소유 여부는 경지규모에 의해 결정되고 있었기 때문에 경지규모가 농민층 구분의 가장 일반적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럴 경우 위 표에서 보듯이 집약적으로 경작하는 중·남부지방에서는 부농, 중농, 빈농(하농)의 경계를 자작지 기준으로 각각 2정보와 0.7정보 정도로 잡을 수 있을 것이다.⁽²⁷⁾ 그리고 대지주는 18세기 후반 이래 '천석군'으로 불렸는데, 그들은 대체로 100정보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20정보 이상의 토지소유주를 중소지주라 한다면 5~20정보를 소유하는 자들은 지주자작 혹은 자작지주로서 지주적 측면과 부농적 측면을 함께 갖고 있는 '경영형지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구분에 의해서 북방면의 농민계층구성을 추론해 본다면, 우선 <표 14>에서 빈농=하농은 439명(A b~c, B a~b, C a), 58.6%이며, 중농은 148명(A d, B c~d, C b~c, D a~b, E a), 19.8%이다. 부농은

(27) 이헌창, 1990 「開港期 市場構造와 그 變化에 관한 研究」 서울대 경제학박사학위논문, 278쪽. 경지의 소유관계와 전답구성을 감안하여 경지면적을 하나의 단위로 환산하기 위해 자경지와 대여지는 자작지의 1/2, 밭은 논이 1/2로 환산했다. 그리고 남부지방에서 부농, 중농, 빈농의 경계를 자작지 기준으로 각각 2정보와 0.7정보 정도, 조방적으로 경작하는 북부지방에서는 그 경계를 각각 3정보와 1정보 정도로 잡고 있다.

95명(C d, D c~e, E b~f, F c~e), 12.7%이며, 경영형지주라고 할 수 있는 자는 61명(F f, G f~h, H h), 8.1%이며, 중소지주는 6명(G i, H i, I i, G j), 0.8%를 차지하고 있다. 북방면 거주호 421호를 대상으로 구분해 본다면, 빈농=하농은 247호, 중농은 83호, 부농은 53호, '경영형지주'는 34호, 중소지주계급은 4호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5. 맺 음 말

광주부 북방면은 정치 경제적으로 서울의 영향권에 포섭되어 있었다. 선초 이래로 개국공신 혹은 사림으로 중앙 정계에 진출했다가 사화와 당쟁의 정쟁과정에서 탈락하거나, 퇴직한 자들이 북방면에 퇴거하였고, 그들을 시작으로 그 일가가 형성되어 왔다. 물론 그들은 반국가권력의 독자적인 정치, 문화생활을 영위했던 것은 아니었다.

북방면의 6개 마을은 집성촌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도마교리는 능성 구씨와 밀양 박씨를 중심으로, 대야미리는 여산 송씨, 속달리는 동래 정씨, 둔대리는 광산 김씨, 청송 심씨, 문화 유씨, 능성 주씨, 건전리는 안동 장씨, 창녕 조씨, 청주 한씨, 팔곡리는 여흥 민씨, 해주 오씨, 광주 이씨를 각각 대성으로 하여 집성촌을 이루고 있으며, 그 밖의 소수의 타성들이 거주하고 있다. 일부 마을의 대성 가문들은 정치사회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었으며, 그러한 사회적 지위가 그들의 경제생활에도 여전히 영향을 미침으로써 그들은 일반농민보다는 더 나은 경제적 지위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북방면은 정치적 혹은 지역적 특수성 때문인지 조선후기 이래 상품화폐경제의 발전에 따른 사회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있었다. 당시 전국적인 농업생산력수준을 볼 때 경기도는 중위권에 속하고 있었는데, 북방면의 농업생산력은 경기도내에서도 중위수준이었던 만큼 전체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쌀의 상품화도 저조하며 상업적 농업도 거의 발달하지 못했다. 그렇다고 봉건적 지주들에 의한 지주제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지주자작 혹은 자작지주로서 지주라기보다는 부농적 경영을 도입하여 부농적 측면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경영형지주'가 상당수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들은 소유지 대부분을 기구와 고용인

을 이용하여 직접 경영하고 있다. 대부분의 농민이 역시 빈농이지만 가족노동력과 머슴 등을 고용하여 얼마간의 경영을 확대하는 부농도 보이고 있다. 그리 높다고는 할 수 없는 노동생산성에 의해서 그러한 부농경영이 가능했던 것이다. 즉 기구와 고용인을 중심으로 하는 상대적으로 높은 노동생산성을 유지해 왔던 일부 마을의 양반가와 농민들이 부농경영의 주체가 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토지생산성이 높고 지주제가 발달한 삼남지방, 상품화폐경제가 발달한 개항장이나 그 배후지 등의 선진적인 농업지대와는 다른 농업경영과 농민층 분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북방면의 경우, 조선후기 이래 사회구조 변동 특히 농촌사회경제구조의 변동을 촉발하는 여러가지 요소, 즉 농업생산력과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농민들의 항쟁과 계급투쟁 등보다는 이 지역이 갖는 정치적 특수성과, 북방면을 지배하고 있는 전통적인 질서와 사회적 관계가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 그것은 어쩌면 이곳의 사회경제구조 변화를 더디게 했거나 발목잡고 있었던 요인이었다. 그리고 대지주 대신에 기구·고용인 등의 노동생산성에 의존하는 상당한 비율의 양반가 '경영형지주'와 부농의 존재, 모든 농민들을 궁지로 몰고 가던 새로운 경제적 조건의 변화 보다는 여전히 지배하고 있는 전통적인 사회정치적 조건의 영향 아래 살아가고 있던 빈농계급의 존재등이 이곳의 농민들이 농민전쟁에 가담하지 않았던 이유였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농촌사회경제구조의 변동을 설명함에 있어 경제적인 요인 외에 정치사회적인 요인을 충분히 고려해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필자: 한신대학교 국사학과 교수)